

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한국협동조합의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

2013. 3. 6



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1. 연구포럼 개요

- 기간: 2013년 3월 6일(수) 14:00~17:00
- 장소: 충남발전연구원 1층 회의실
- 대상: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부문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 및 종사자, 관련 연구자, 활동가, 공무원, 일반 시민 등

2. 연구 포럼 목적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기존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기여 등에 대한 이해를 도모
- 협동조합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충남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3. 행사순서

14:00~14:05	개회사	김종수
14:05~14:10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소개	
14:10~14:50	발 표 1. 한국협동조합 정체성위기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권영근
14:50~15:30	발 표 2.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과제	유정규
15:30~15:40	휴식	
15:40~17:00	전체 토론	송두범

목 차

발 표

한국협동조합 정체성(Identity) 위기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권영근 부이사장(한국 농어촌 사회연구소)1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과제

유정규 운영이사(지역재단)63

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발 표 1.

한국 협동조합 정체성(Identity) 위기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권 영 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이사장

한국 협동조합 정체성(Identity) 위기와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부소장)

- 협동조합은 Association과 Enterprise의 변증법적 통일체이다 -
- 협동조합은, 「사회자본」을 토대로 한 사업체이다. 「사회자본」은 「지역」을 토대로 형성된 것이다. -
- 「시장과 국가의 복합 시스템에 의한 국민생활의 식민지화」, 「재(財閥) · 권(權力) · 언(論) · 학(學界) · 종(宗教)의 담합구조에 의한 국민생활의 식민지화」를 협동조합 섹터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한다 -
“정신이상이란 꼭 같은 짓을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행태”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하였다.

I. 정치 경제학과 사회(적) 경제(학)

1. 「외부 불경제」를 통한 경제발전 · 「사회적 배제」위에 쌓아 올린 부의 축적과 「강자」를 위한 경제학

<Fair> Relationship이 상실되고, 공정이라는 윤리가 상실되어서, 자기 이외의 것들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얻을려고 하는 「외부불경제」가 중시되는 현대의 경제학.

현대의 경제학은 농촌과 같은 「공간적으로 배제」되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자들인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해와 생태 · 환경파괴, 실업, 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추방 당하는 원주민, 빈곤, 공공서비스의 축소, 원자력과 GMO 및 EDCs의 개발과 판매 등의 손해

를 끼치고 있는 것을 용인하고 있으며, 그 가해자인 「강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요컨대, 현대의 경제발전은 「외부불경제」와 「사회적 배제」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현대의 경제학은 「강자」를 위한 정치경제학이다. 그러므로,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배제」의 척결을 위한 경제학, 「약자」를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 즉, 「사회적 경제」를 위한 경제학이 필요하다.

2. 금융의 극단적 글로벌화와 금융증권의 버블과 파탄=>「월가(街)를 지배하라!!」, 1%를 제외한 「전총적(全層的)인 사회적 배제」

아메리카의 서브 프라임론이 리스크의 증권화라는 수법으로 세계로 확산되어서, 2008년 9월에는 USA의 대형 증권회사인 리만브라더스의 경영파탄으로 글로벌 금융·경제위기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금융 시스템 보다도 훨씬 적은 실체경제의 일부인 국가 재정도 이에 휘말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을 필두로 전 세계를 장기불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성장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서도, 자유화의 철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시장경제가 효율성을 가지면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敗者가 차례로 퇴출되어야 하는 데, 승자들이 거액을 대부하고 있기 때문에 퇴장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IMF도 세계은행도 각국의 중앙은행도 손해를 감내할 자기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흑자국인 데, 독일은 물론 산유국도 재정에 여유가 없다. 유럽 중앙은행(ECB)과 IMF의 대부는 패널티 금리(리스크 프레미엄 조건의 대부)이기 때문에 「지원」이라기 보다는 「금융착취」에 가깝다. 경제 소국인 피원조국은 비참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정금융의 연쇄 위기에 대한 「구제책」이라기 보다는 일시적 「미봉책」일 뿐이다. 독일의 유권자는 출혈지원에 반대할 것이고, 독일의 은행들도, 유로권 내의 채무국 연쇄파탄으로 인한 국채 디폴트의 손실을 견디어 낼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탈출구가 없는 딜레마가 아닌가? 「독일 유로」와 「남부 유럽 유로」를 분리하여서, 각자 자력갱생 하지 않으면 않될지도 모른다.

금융 재정위기의 제 2단계인 유로 위기는, 유로권과 역내 거래가 많은, 자급도가 높은 경제권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시스템 속에 잠재하는 불안정성이 한층 더 명확히 표출되어 나타났다. ① 금융 버블 파탄의 손실이 GDP의 몇 배에 달하며, 정부나 중앙은행의 구제능력을 초월한다. ② 국제적 「지원」이 고리대부(0% 금리시대에 5%의 금리)이기 때문에 상환불능, 위기재발 가능성이 높다. ③ 상투적인 위기대책은 악명높은 IMF 방식의 「구조조정 책」이다. 이는, 불황과 고실업 사태 하에서도 재정, 금융의 동시긴축, 사회보장비의 삭감 등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불황심화와 GDP 축소를 초래한다. ④ 인구 1천만 명 이하의 국가에서 발생한 재정금융 연쇄위기가 유로권 전체를 흔들고 있다. 금융 취약국의 국채(서브 프라임적 국채)가 가장 중요한 금융 수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⑤ 유로화의 위기·유로화의 낮은 가치가 역외 수출 증대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과 화란을 이롭게 하고, 유로채무의 금리인상으로 적자국을 고통스럽게 하여서 통화시장이 불균형 확대로 작용하고 있다.

요컨대, 정부도 IMF도 은행·금융기관에 의지하고 있다. 차입의 확대 없이는 존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금융기관은 재정적 구제와 국채에서 얻는 수익에 의지하고 있다. 이는 확실한 대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위험한 의존관계는 정부의 적자 누적이 되어도 붕괴되고, 은행의 손실이 누적되어도 붕괴된다. 진퇴양난이다.

지원 · 파탄 · 재지원……이라는 사이클이 중단되면, 해당 국가는 지불 불능(모라토리움)으로 이행한다. 자유로운 시장 시스템은 「호혜 시스템」이 아니므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고 있으며, 재건의 첫 삽은, 차입금에 의한 수입을 중지하고, 실효성 있는 수입관세를 설정하는 것이다. 수입관세의 인상을 무역 적자국에 만이라도 인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아직도 글로벌화를 확대 · 심화시킬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적 자력갱생의 길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에 토대를 둔 협동조합의 역할이다.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다.

3. 로마 교황 요한 바울 2세는, 1981년 9월 14일,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이라는 제목의 칙서(Encyclical Letter)를 발표하였다.

그 칙서에서, 「이 칙서가 제시한 목적으로 향하는 길은, 가능한 한, **자본의 소유권에 대하여 노동을 연합 시킨다**라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을 위하여, 광범한 범위의 중간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길도 있을 수 있다. 그 조직은, 공공 단체에 대하여 유효한 **자율성**을 가지며, **충성심 높은 조합원 상호의 협력관계** 하에서, 그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공동이익의 확보를 우선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조직은, 현실에 존재하는 커뮤니티의 본연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즉, 각각의 회원이 인정받고, 인간으로서 대접받으며, 스스로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즉, 이 칙서는, USA에서 레이건의 등장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자 마자, 그것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 「**공동선**」인 「**사회적 배제의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협동조합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아념이다.

요약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에 기초를 둔 『공동 소유자』로 되는 것」을 중시하고,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목적을 갖는 광범한 중간조직의 활성화, 그들 조직이, 국가나 자치체로 부터의 자율성을 가지며, 그리하여 커뮤니티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발달이 보장되는, 즉, 「사회적 배제의 척결」을 통하여 「인생에 대한 적극적인 참가」를 설파하고, 이러한 것들을 체현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

이러한 담론을 토대로, 이태리의 경우, 1980년대 전반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의 제정운동이 시작되었다. 법 제정운동을 뒷받침한 것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각지에서 축적되어 온 Association운동, 즉, Associative한 시민활동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Identity를 확립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이를 뒤이어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도 신자유주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였다.

4. 아직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가 성립되기도 전이며, 제2인터내셔널 결성 2년 후인 1891년, 로마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Rerum Novarum*이라는 제목의 칙서(Encyclical Letter), 「자본과 노동에 대하여」(Encyclical of Pope LEO XIII ON Capital and Labor)가 발표되었다.

이 칙서는 당시의 상황을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Abuses of Capitalism and Illusions of Socialism)」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자본주의 제도가 많은 폐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은 환상이라는 것이었다. 그후 1917년, 러

1) J. Earle, 1986, *The Italian Cooperative Movement*, Allen & Unwin, 川口清史・佐藤誠 監譯『イタリア協同組合 物語』リベルタ出版, 1992)

시아에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국이 성립하였고, 70여년 간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건설되어서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하였으나, 그 내부의 모순으로 인하여 사회주의 체제는 해체되었다. 새로운 정치, 경제제도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지만, 그 자본주의 제도도 사회주의 제도처럼 여러 가지 내부적 모순을 많이 내포하면서 초기에 건설하였던 자본주의 제도와는 많이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Rerum Novarum 이후, 100년이 지난 1991년 5월 1일, 교황 요한 폴 2세는 Rerum Novarum 100년을 기념하는 <100주년>(Centesimus Annus)이라는 제목의 칙서, 「새로운 Rerum Novarum」을 발표하였다. 그 중심 내용은 앞의 것과는 반대로, 「사회주의 폐해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Abuses of Socialism and Illusions of Capitalism)」이라는 예언적 표현이다. 그로부터 3개월 후, 1991년 8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해체되었다.

이 예언서가 주는 의미는, 오늘날 신자유주의 Globalism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협동의 Rule>을 지구화 하라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란 바로 “신자유주의와 Globalization(세계화)”이며, 이 “신자유주의와 Globalization”에 대하여 환상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농민,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환경·생태계·생명을 무시 또는 「사회적 배제」 시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것을 타국에 수출하는 것이 Globalization이며, 그 현실적 구조가 WTO체제이고 한미 FTA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는 Entropy 증대법칙²⁾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칙서에 원용된 이론은 경제학자 베블렌의 사회적 <공통> 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이론이다. 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칙서에서는 신자유주의 Globalization에 맞서는 대응논리로 <협동 규범(Rule)

2) Entropy증대법칙은 생명의 원리를 말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순환성, 다양성, 상호의존적 관계성을 제대로 유지하여야 만이 그 정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을 Globalization(세계화)>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은 신자유주의적 Globalization에 대한 방어전략·방어수단으로 유효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세계 협동조합 운동 진영이 Private Sector(제1섹터), Public Sector(제2섹터)가 아닌 Common Sector 또는 협동조합 섹터, 즉, 제 3섹터로서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économie sociale, Sozialwirtschaft)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조류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EU에서 협동조합운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EU는 협동조합, 공제조직, NPO, 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비영리·협동조직**이 담당하는 경제를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économie sociale, Sozialwirtschaft)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EU, Director General 23 – Association Commission). 협동조합은 사(私)적 섹터도 아니며 공(公)적 섹터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 3섹터」라고 일컫는 경우가 많지만, 이 외에도 「비영리(NPO) 섹터」, 「시민 섹터」, 「사회적 섹터」, 「사회적 경제 섹터」 등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있다.

5. 정치경제(학)와 사회적 경제(학)[Political Economy와 Social Economy]

Jacques Donzelot, (1977), *La police des familles*, Paris, Minuit (宇波彰 譯, 『家族に介入する社會——近代家族と國家の管理裝置』, 新曜社, 1991年)에 의하면, 1830년대의 「새로운 빈곤」에 대응한 사상에는 3가지 조류가 있었다. 첫째, 유토피아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과 가족을 폐지하고, 국가관리의 강화에 의한 사회혁명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독교 정치경제학」에는, 자선협회(Société charitable)에 속하는 Alban de Villeneuve-Bargemont, Bon Bigot de Morogues, de Pommeuse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 경제학」에는, 「기독교 도덕협회」, 「초등 교육협회」 등에 속하는 La

Rochfoucauld-Liancourt, 시스몽디, Joseph Droz, Gérando, C. Dunoyer, Dupin, F. Guizot, Louis-René Villermé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사회주의 사상을 제외하면, 2가지 사상 조류가 「새로운 빈곤」에 대응하여 사상적 경합을 벌였다. 첫째인 「기독교 정치경제학」은, 부유층과 빈곤층의 전통적인 지배복종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선」의 확장에 의해, 빈곤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둘째, 「사회 경제학」은, 저축·위생 등에 관련된 「모랄」을 빈민에게 내면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억압이나 복종의 제도화(강제)가 아니라, 교육이나 조언을 통하여 빈민의 자력갱생에 작용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Donzelot에 의하면, 「19세기를 통하여, 기독교 정치경제학의 자선 중시와 사회경제학의 박애중시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 국가 권력이 장악하여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 ∴ 국가권력을 잡은 샤크방 당 세력은, 자선의 미명 하에 기득권 유지를 할려는 가톨릭 세력([현재, 한국 기독교의 신·구교의 경우도 유사함](#))을 철퇴시켰다] 사상 간에는 경합이 계속되었으며」, 중국에는, 「박애가 승리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가족의 역할 강화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가톨릭에의 의존으로 부터의 탈피와 동시에 사적 영역의 제도화가 아니라, 그것이 의학·위생·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규율장치로서 재편된 것을 의미하였다.

II. 레이드로 보고서와 ICA 1995년 문서

1. 「레이드로 보고서」의 정체성 위기

1). 「레이드로 보고서」는, 冒頭, 「배경과 목적」에,

「1978년 9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ICA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이, 「앞으로 20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그 결과로서 20세기 말 까지 협동조합 조직의 활동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하여」 연구하도록 결정한 것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위기감과 두려움, 필요성에 더하여 가능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첫째, 협동조합인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든지, 발전을 방해하는 것 같은 세계정세의 다양한 경향에 대하여, 보다 인식을 깊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은 현대의 빠른 변화의 속도에 추월당하여, 따라 가지 못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

셋째, 현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놀라운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거대한 MNC의 가공할 힘에, 협동조합 시스템은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넷째, 다양한 종류의 협동조합들이 출범한 지 200 년 이상에 걸쳐서 쌓아 온 강함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환이나 재구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등이다.

2). 실제로 과거의 협동조합 운동 내부에서는, 한편에서는, 협동조합이 당시 당시의 시대에 적합한 사회성이나 사업수행능력을 갖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던져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협동조합인은 그와 같은 의문에 끊임없이 대응하여 왔다. 따라서 그들이 안고 있는 위기감, 두려움, 필요

성, 가능성은, 협동조합 운동을 실천하고 유지하여 온 지금까지의 협동조합인이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 처럼, 현재의 협동조합인도 또한 현대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여, 「대항력=제 3의 힘」으로서 협동조합의 경제·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여 가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성장과 변화의 3단계

레이드로는 이러한 과정을 역사를 회고하면서, 「협동조합의 성장과 변화의 3단계」라고 부르고, 「협동조합은 각 단계에서 각각의 위기에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협동조합은 각 시대와 단계에서 직면한 해결과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비로소 「성장과 변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역사는 언제나 각각의 시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역사관]이 중요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서 비로소 성장과 변화를 실현하여 왔다. 한국의 생협도, 매년, 또는 장기·중기·단기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추출이 중요하고, 그 과제를 위기로 느끼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며, 그래야 그 해결해야 할 과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방안을 도출하고 실천한다.

4). 단계별 위기

레이드로는 협동조합이 최초의 단계에서 직면하는 위기, 즉 극복해야 할 제 1의 위기를 「신뢰성의 위기(Credibility Crisis)」, 제 2의 위기를 「경영의 위기(Managerial Crisis)」, 그리고 제 3의 위기를 「사상·이념(Ideological Crisis)의 위기」라고 제시하였다. 이들 3가지 위기는, 협동조합 운동이 전체로서 그 긴 역사 속에서 경험한 위기만이 아니라, 개별 협동조합도 경험한 위기이며, 또한 신설된 협동조합도 경험하는 위기일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최초로 뿌리를 내린 곳은 어디에도, 협동조합을 창설 할려고 했던 곳의 소수의 선구자들의 신념에 의하여 「신뢰성의 위기」는 극복되어 왔다. 당시는, 「사업은 사업가가 소유하고, 경영하고, 지휘하는 것으로, 보통인들이 관여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던 시대에, 협동조합이 「선량하고 숭고한 운동이라는 사실로서 대중의 마음 속에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다.

협동조합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남녀들의 신뢰를 얻는다고 하여도, 경영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혹은 사업경험 등 실제의 사업전개와 협동조합 시스템 간에 간극이 생기면, 협동조합은 시대에 적합한 사회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도 쇠퇴하게 된다. 그리하여 협동조합은 「경영의 위기」를 맞게된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다수의 짚고 유능한 경영 담당자가 협동조합의 사업에 마음이 끌리도록 되어서, 협동조합 운동의 이미지가 멀지 않아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변혁에도 커다란 노력이 집중되었다. 「협동조합도 다른 사업체와 똑같이 효율적이며 최신의 근대적인 사업체로 되는 것이 가능하였고, 경험 풍부한 다수의 관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생애의 일거리로서 운동에 참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협동조합 시스템이 확실히 확립되어 있는 데, 협동조합은 제 3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제 3의 위기를 「이데올로기의 위기」라고 부르므로서, 레이드로는, 현재의 협동조합인의 협동조합에 대한 「신념」, 「의견」, 「(심적)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인이여!! 당신의 「협동조합의 아이덴티티」란 무엇인가요? 라고.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이 위기는, 협동조합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기업과는 다른 종류의 기업으로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있다. 협동조합은 상업적인 의미에서 다른 기업과 동일한 효율성을 올리는 데 성공하였다면, 그것으

로 충분한가? 또한 협동조합은 다른 기업과 동일한 사업기술이나 사업수법을 이용한다면, 그것만으로 조합원의 지지와 충성을 얻는데 충분한 이유가 되겠는가? 나아가서, 세계가 기묘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길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면, 협동조합도 동일한 길로 변화하여 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그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다른 종류의 경제적·사회적 질서를 창출해야 하는가? ”

레이드로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위기」는 「신뢰성의 위기」, 「경영의 위기」 이상으로 심각하고 폭넓게 받아들여진 위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위기」의 극복을 전망하기 위한 「지침」이나 「자료」를 협동조합인에게 제공하여,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위기극복의 가능성이 「장래의 선택」에서 「4가지의 우선 분야」에 제시된 것이었다.

5). 레이드로 보고서 이후의 협동조합 운동의 발자취

－세계적인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ICA-ILO의 새로운 노력－

1980년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 27회 ICA 대회에서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이라는 레이드로 보고서(A.F. Laidlaw,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Studies and Reports X V*, ICA1980, pp. 3~76)가 채택되었다.

그 당시의 시점에서 ICA 산하, 협동조합 조합원은 3.6억인(생협 1.3억인, 농협 6,500만인, 노동자 생산협동조합 600만 명, 어협 200만 명, 신협 1.2억인, 주택협동조합 1,500만 명, 기타 1,600만 명)이였다. 그 20년 전인 1960년에는 1.8억 인에 비하면 약 2배(그 중, 생협은 1.5배, 농협 2.1배, 신협 2.6배로 증가됨)가 증가했다.

1991년 ICA 산하, 조합원 수는 6.7억 명(ICA회원으로 가맹한 전국조직은 191개, 국제기관은 8, 국가 수는 79개국)으로 1980년의

약 2배로 증가하였다. 회원수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비율은 1970년 46%에서 1991년에는 26%로 저하했으나 아시아는 36%에서 59%로 증가했다. 국제협동조합 운동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 조합원의 비율의 증가를 반영하여, 1992년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동경에서 제 30회 ICA대회가 개최되었다.

다시 1980년으로 부터서 30년이 경과한 2009년에는, 가입된 전체 조합원이 9억 인으로 또다시 2.5배 증가되어서, 세계 최대의 비영리 민간조직이 되었다(Sven Åke Böök, "CO-OPERATIVES VALUES IN A CHANGING WORLD", *Studies and Reports XIX*, ICA 1980, 日生協/生協總合研究所 譯 『變化する世界における協同組合の價值』 コープ出版, 1993년 17쪽).

2. 제 3섹터와 경제 민주화 : 레이드로 보고서의 「협동조합 섹터」론

1). 레이드로 보고서의 협동조합의「2종의 목적」(Association과 Enterprise)은, 그의 협동조합 섹터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의 「2종의 목적」은, 협동조합의 사업 시스템을 사적기업이나 공적기업의 사업 시스템에서 구별되는 협동조합의 특징적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협동조합 섹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공적 섹터(제 1섹터)와 사적 섹터(제 2섹터) 그리고 협동조합 섹터(제 3섹터) 중, 어떤 섹터도 단독으로는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한 사회질서를 정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3가지가 서로 병행하여 기능하고, 상호 보완하므로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것을 달성한다」라는 관점이다.

둘째는, 「섹터 론」은, 3가지 기업 섹터에는 각각의 기능에 대응하는 경제부문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이다. 특히 협동조합 섹터는, 정

부와 더불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관료에 의한 지배 및 국가에 의해 흡수할려는 어떠한 경향에도 반대하고, 저항한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자립적이고 자기통치적인 자유인들의 조직(Association)이며, 따라서 자율적 또는 자기통치적이지 않으면 안돼기 때문이다.

셋째는, 「장래 성공하는 협동조합은, 이데올로기 적으로는, 프라그마티즘과 아이디얼리즘의 혼합체로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이다. 협동조합은 「실제적인 이유에서, 사기업과 유리한 계약을 맺더라도 자본주의를 추동하여 가는 주요한 동기, 즉, 이윤추구에 반대하는 것에는 비타협적이다」.

넷째는, 협동조합 섹터는, 이데올로기 적으로는 다른 2가지 섹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관점이다. 즉, 「협동조합 섹터는, 몇 가지 점에서는 공적 섹터와 유사하고, 다른 점에서는 사적 섹터와 유사하지만,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두 가지로 부터 가장 바람직한 특질을 받아 들일려고 하고 있다」.

다섯째, 협동조합 섹터의 문맥에서는,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수정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하나의 대안(Alternative)」이라는 관점이다. 과거에는 협동조합의 발전 패턴의 대부분은 자본주의적 기업 모델에 규정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섯째, 협동조합은 사적 기업과 구별되어 있고, 사적 기업의 목적이나 하는 행위 방법의 대부분에도 반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질서라고 하는 점에서는 자본주의의 등급 부여를 하는 것을 협동조합인은 인정한다는 관점이다. 즉, 어떤 사적 기업은 탐욕스럽고 냉혹하며, 또한 철저하게 반 사회적이지만, 약간의 사적 기업은 지역 커뮤니티에 협력적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적어도 수탈 내지 폭리를 탐하는 것도 전혀 없다. 따라서 전자를 일소하고 대체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목표이며 목적이어야 한다. 후자는 우리들이 「양질의 형태의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적(敵)은 아니다.

일곱째는, 국가와 사적 섹터에 대한 협동조합의 입장은, 때로는 다면적이며 또는 유연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관점이다.

협동조합으로서는, 정부가 사회에 개방되어 있고, 민주적이며, 진보적이라면, 국가와의 합의, 협력 혹은 공동사업도 가능하며, 또는 사적 섹터와의 동맹 까지도, 「보다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시에, 협동조합 운동가는 협동조합의 이데올로기는 한편에서는 극단적인 국가 주권주의에, 다른 한편에서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위협 당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덟 번째의 관점은, ICA의 「협동조합 간 협동」의 원칙은, 「협동조합 섹터의 개념을 지지하는 스테이트먼트(Statement)」라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들이 『레이드로 보고서』에서 제시된 「협동조합 섹터」 론의 골자이다.

레이드로의 협동조합 섹터론은, ICA 모스크바 대회 6년 전인 1974년 미주리 대학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그가 행한 강연에 토대를 두고 있다(A.F. Laidlaw, *The Co-operative Sector : Outline of a presentation at the Graduate Institute of Co-operative Leadership*,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July 22, 1974).

2). 「2대 권력」과 「제 3의 힘」

그는 이러한 방법을 확립하는 것은, 「세계와 인류를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는」 정부(제 1섹터)와 MNC 같은 사적 자본주의 기업(제 2섹터)이라는 「2대 권력」 만으로는 절대 불가능 하다고 한다. 이 2가지 권력에 대항하는 강력한 「대항력(Countervailing Force)」으로서의 「민중의 힘(People Power)」을 육성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이념·사상 그리고 시스템으로

도입된, 인간적이며 합리적인 원칙에 기초하여 조직되어 있는 유력한 「제 3의 힘(Third Force)」을 민중 속에 창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 하였다.

요컨대, 그는 협동조합(제 3섹터)을 현실적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재벌·MNC나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제 3의 힘」으로 인정하고, 협동조합 운동이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기능을 작동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항력」은, 기본적으로는, 각국의 지역 커뮤니티에서 육성된 협동조합 조직에 의해 담당되고, 또한 그들 협동조합 조직이 국내에서 연대하는 것에 의하여, 나아가서는 국경을 초월한 협동조합 조직의 연대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경제·사회적 기능의 유효성은 확실히 「협동조합 섹터」의 유효성으로 되어 나타난다고 레이드로는 설명한다. 그리하여 **제 1섹터, 제 2섹터와 공존하는 제 3섹터를 확립하는 길이 경제 민주화의 첨경**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의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경제적인 것으로 한정·제한하고, 2가지 권력에 대한 대항력=제 3의 힘을 거세시킨 것은, 첫째, 권력과 자본이고, 다음은 학자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ICA 제 4원칙에 대한 해석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 섹터의 경제·사회적 기능의 유효성은 「2가지 권력」에 대한 「대항력=제 3의 힘」으로 되는 것. 이것이 경제 민주화의 길이다.

3). 4가지 우선 분야

레이드로가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하였던 것은, 그의 「협동조합 섹터론」을 토대로 하여 「3가지의 위기」 중에서도 특히 「이데올로기의 위기」와 「4가지의 우선분야」를 관련시켰던 것이었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4가지의 우선분야」는, 협동조합 운동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위기」를 핵심으로 하는 「3가지 위기」, 협동조합이 취해야 할 4가지의 미해결 문제, 협동조합 섹터론의 관점, 나아가서 협동조합 섹터가 「2가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제 3의 힘」으로 성장하는 과제, 이러한 것들이 전제로 되어서 제기되고 있다.

제 1의 우선 분야 : 세계의 기아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가장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분야가 농업이나 식량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중요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식량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소비 까지가 협동조합으로서 최대의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요컨대, 「세계의 기아를 해결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Social Mission인 것이다. 이 우선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몰두해야 할 목표와 과제는, 많은 나라의 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것 처럼,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식량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농민과 도시인들과의 협의」, 「**협동조합에 의한 종합적 식량정책의 확립**」(한국은 농협이나 생협, 모두 소홀히 하고 있음)이다.

제 2 우선 분야 : 생산적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여기에서는 노동자 협동조합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레이드로가 주장하고 있는 「2가지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제 3의 힘」으로서, 경제적 · 사회적 기능과 능력을 가장 명료하게 찾을 수 있다.

고용의 창출,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교육 · 보건/의료 · 주택」이라는 Safety-net의 정비, 전통문화의 존중 등 단일한 협동조합으로는 곤난한 종합적인 경제적 ·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여서 새로운 경제 ·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데 공헌하고 있는 모습을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가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사적 자본주의적 기업과 다른 고용형태의 협동조합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 3의 우선분야 : 사회의 보호자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동조합

이것은, 「소비자 협동조합(생협)의 복권」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다. 그는 생협의 복권을 「2 가지 목적」의 실현을 통하여, 생협의 실질화 시키는 방향에서 생협의 복권을 시도하고, 협동조합 섹터의 커다란 진전을 동시에 도모할려고 하였다.

제 4의 우선분야 :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건설 : 한국의 경우 <생명창고·지역 순환형 사회 형성 운동>의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에 있어서,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건설」은 「2가지 권력」에 대항하는 「제 3의 힘」으로서 협동조합 섹터의 확립을 통하여 지역에 토대를 둔, 대안社会의 건설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한 종류만의 협동조합에 사회의 개혁이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과부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종다양한 협동조합의 수단과 모든 영역의 조직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레이드로는, 「거시적(Macro) 차원의 플레닝 보다도 오히려 마이크로적 플레닝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커다란 변혁이나 새로운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Globalisation 시대의 사회개혁이나 새로운 경제, 사회질서의 형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계획을 지역 커뮤니티의 단계에서 작성할 필요성」 말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토대를 둔 고용의 창출과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을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전개를 전망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협동조합 커뮤니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한국의 종합 농협 처럼) “광범한 서비스와 사업은, 도시에서는 하나의 종합 협동조합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이 쉽게 다닐 수 있는 협동조합 서비스 센터의 속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갖는 조직을 함께 입주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그 일반적인 목적은, 주택, 저축, 신용, 의료, 식료와 기타 일용품, 고령자 돌봄(Care), 탁아소, 보육원 등의 서비스를 각종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므로서, 명확히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이같이 하여, Area 내에 많은 협동조합인이 소비자로서 만이 아니라, 생산자 혹은 노동자로서도 협동조합 활동에 관계하게 된다.”

그렇지만, 레이드로가 묘사하고 있는 협동조합 서비스 센터로서의 「협동조합 커뮤니티」는 몬드리곤 모델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 이같은 모델은 영국의 사회적 기업 모델과 유사하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모델은, 기능을 달리하는 몇 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기능을 달리하는 사업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SES(the Sustainable Enterprise Strategies)는, 레이드로가 기술하고 있는 것 처럼, 협동조합 서비스 센터를 계획, 실천하고 있으며, 그 목표가 「협동조합 커뮤니티(Co-operative Community)」의 건설이다. 이 「협동조합 서비스 센터」의 건설도 몬드리곤의 협동조합 기업 복합체와 마찬가지로 「협동조합 섹터」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목표이다.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협동조합 섹터론의 부활과 현실의 협동조합 운동

1). 대항력으로서의 협동조합 섹터 · 대안사회의 모색

협동조합 섹터론은, ILO의 죄루쥬 포케와 모리스 코롬방이 제기한 아래, 『레이드로 보고서』가 제기하기 전 까지는 협동조합 운동 진영 속에서는 그다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

서 『레이드로 보고서』는 협동조합 섹터론에 다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협동조합 섹터론의 중요성을 협동조합 운동가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준 것은 그의 공로이다. 세계의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차츰차츰 2가지 거대 권력에 대한 「대항력」으로서의 「협동조합 섹터」가 지역 커뮤니티를 토대로 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

2). 호주의 Maleny 협동조합 커뮤니티가 몬드리곤과는 다르면서도, 레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협동조합 섹터론의「살아 있는 교과서」의 하나이라고 할 수 있다.

멀레니의 「질 높은 협동조합 커뮤니티의 특징」으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 ① 참가 ·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협동조합 커뮤니티, ② 높은 문화 · 교육 수준, ③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의 영역에서 밸런스를 중시하고, ④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사람 친화적이며, 공평한 협력의 사회, ⑤ 저 탄소 · 자원순환형 생활 등 자연과의 공생이 생활 스타일로 되어 있는 파마 컬쳐의 사상을 들고 있다.

이 협동조합 커뮤니티도 소비자 협동조합, 크레디트 유니온, 지역 통화, Food Coop, 사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섹터」가 토대로 되어서 성립하고, 전개되고 있다.

3). 한국 협동조합 운동과 정체성 위기의 유형

협동조합 운동이 정체성위기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한국 자본주의 전개과정의 특수성에 따른 협동조합 존재의 현실성 그리고 협동조합 운동의 주·객관적 요소에 기인할 수 밖에 없다. 레이드로가 말한, 정체성 위기의 3가지 유형(형성기의 「신뢰의 위기」 그리고 「경영의 위기」 및 「사상의 위기」)은,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 발전의 질과 양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협동조합 운동을 ‘사회주의 운동

의 일환’이라고 본, 그릇된 인식에 기초한 정부·집권자들의 탄압, 그 와중에서 질과 양적으로 발전한 한국자본주의와 자본가 그룹의 급팽창 및 국민의 소득증대, 따라서 자본가 그룹의 주식회사 대기업과 상대해야 하는 협동조합 규모의 영세성과 열악성, 협동조합 운동가들의 열악한 생활기반, 소위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정부의 속 좁은 포용정책, 운동사의 단절, 백년대계인 한국 제도교육의 교육철학³⁾ 등이 협동조합 운동의 정체성 위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사상의 위기」가 모두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가 오래되었느냐 또는 일천하느냐는 개별조합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그 표현형태에 차이가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가로 부터의 죽음의 키스」를 바라는 유형 : 「국가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유형」과 정부로 부터 정책적 지원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형.

Government-Oriented NGO 및 Government-Supported NGO로서 사실상 또는 더 이상 NGO라고 하기 어려운 유형. 한국의 현대사의 아픈 유산(遺産)일 수도 있다. 이점에서 <협동조합 민주화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의 민주화>는 협동조합 진영의 발전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2). 다국적 기업(MNC), 총자본의 공세에 체념·굴복하는 유형 : 총자본의 논리와 행태를 모방·추수하는 유형.

이는 협동조합을 Association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협동조합은 물론, 협동조합 운동 연대의 미래에 대한 비전 [“예’,

3). 우리나라 제도교육에 있어서,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경쟁」을 가르치는 중요한 그리고 변함없는 교육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교육에서 「협동」을 배울기회는 대학을 마칠 때 까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협동」에 대한 관념은 「공통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협동조합-->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생협 조합원의 노동자 집합(Workers Collective)-->이종의 다양한 협동조합 Net-Work·연대-->몬드라곤 같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결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많은 협동조합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요청을 받은 각국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또한, 재벌이나 대기업의 요구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 글로벌한 시장경제의 가속화, WTO 체제의 강화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므로서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타격과 희생을 초래하였으며, 그로 인해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사상의 위기」라는 3중고에 시달리게 하였다.

이같은 유형은 대부분의 경우, 지역의 개별조합 보다는 연합조직인 상급 협동조합에 그 책임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3). 「대기업의 신화」 신뢰형 : 이 유형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유형, 아메리카의 「신세대 협동조합」 모방형, 그리고 협동조합과 관련된 하부조직 등에서의 주식회사 형태를 활용하는 유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 운동을 형식과 내용면에서 말끔하게 정리하고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가장 진솔하고 양심적이며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그릇된 환상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어째든, 이런 유형이 협동조합 운동의 Identity 위기를 초래한 가장 중심적인 요인이었다고 하겠다.

(4). 협동조합 「운동성」의 소홀, 협동조합 「사업성」의 중시형 : 교육 결여형, 비 Association 조직.

(5).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 소홀 및 「협동조합 지역사회」 등 미래에 대한 비전 결여형

4). 한국 생협운동이 놓치고 있는 것, 몇 가지 : Association 운동의 강화

협동조합은 Association이다. Association은 ‘상호 의존적 관계성’[따라서, 사회성, 민주주의, 평등성, 사회적 배제의 척결 등]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것은 우선 2가지를 의미한다. 첫째는 ‘소비자 의식 제고와 권리 찾기’이고, 둘째는, 조합원들과 다른 그룹들, 예컨대, 유기농산물 생산자 농민 그룹과의 ‘연대’이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농민과는 연대’하고, ‘정부나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자기권리 찾기 운동을 하여야 한다. 생협은 ‘소비자 권리 찾기 운동’을 소홀히 하여야 하는가?

(1) 생명윤리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GMO 표시제

생명윤리의 중요한 원칙인 Informed Consent의 원칙과 환자[=소비자]의 권리선언 및 환자[=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같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권리찾기 운동이 더 한층 전개되어야 한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도록 표시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캠페인)을 하면서도, ‘소비자의 권리찾기’ 운동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1962년 3월 15일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특별 메시지’에서 언급한 소비자의 4가지 기본권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생명윤리와 소비자의 권리가 동시에 존중되도록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엄격한 표시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4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다. 즉, ① 안전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Safety), ② 정보를 숙지해야 할 권리(the Right to be Informed), ③ 선택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Choose), ④ 의견을 반영할 권리(the Right to be Heard) 이다.

1975년 제럴드 R. 포드에 의해, 소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Education)가 추가되고, 현재는 1980년 국제소비자기구(Consumers International)가 추가한 3가지 권리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8대 권리라고 한다. 즉, ① 생활의 기본적 Needs를 보장받을 권리(the Right to Satisfaction of Basic Needs), ② 배상 혹은 구제(救濟)를 요구할 권리(the Right to Redress), ③ 교육받을 권리(the Right to Education), ④ 건강한 환경을 요구할 권리(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등이다.

따라서, GMO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생명윤리의 원칙과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표시제가 가이드 라인에 의해 추진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적 의무사항으로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GMO 농작물 및 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음의 3가지 관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접근되고, 제도화 되어서 실천되어야 한다. 즉, 첫째, 생명윤리의 관점과 둘째, 소비자의 8대 권리의 충족이라는 관점 그리고 나아가 셋째, Amartya Sen과 Emma Rothchilds 등의 주장과 노력으로 정착·확립된 UN의 『인간개발 보고서』(UNDP, *Human Development Report*)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안전보장(Human Security)」이라는 3가지의 관점이 조화롭게 충족되어야 한다.

이렇게 접근할 때, GMO에 대한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실효성 있는 선택을 가능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알고 싶은 정보, 즉, GMO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핵심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첫째, GMO가 식품에 원료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GMO 작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제조한 결과 GMO 성분이 추출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GMO에 대한 표시제도는 그 안전성에 둔감한 개발 기업측

의 자유에 맡겨진 임의성 표시제도를 근절시키는 것이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가이드 라인을 토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강제적 의무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GMO제품 및 상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기업측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Accountability 제도의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PL법을 개정·강화하여야 한다. GMO 표시제도는 GMO먹거리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GMO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먹거리의 안전성, 생태·환경에 대한 안전성의 보전 그리고 생명의 안전성 및 인간의 안전보장도 강화될 것이다.

(2) 「바이오 안전성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약칭, 나고야 추가 의정서) 챕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10월 16일, 일본의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5차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 총회(MOP 5)에서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이하, 나고야 추가의정서)가 챕터되었다. 적어도 40여의 국가나 지역이 서명한 후, 9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고, 이를 위한 서명은 UN 본부에서, 2011년 3월 7일에서 2012년 3월 6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나고야 추가 의정서는, GMO가 수입국에서 재래종과의 교잡한다든지, 구축된다든지 하여서 생태계·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 각국 정부가 개발기업이나 수입업자 등 피해의 원인을 만든 사업자를 특정하여, 피해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LMO로 인해 발생한 생물다양성의 손상에 대한 책임과 구제(복구)에 관한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

세이프티에 관한 카르타해나 의정서 제 27조에 토대를 둔 책임과 구제(복구)에 관한 공동의장 Friends 회의(BSGFLR)」에 대한 교섭은, 2004년 이래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동 추가 의정서는 원래, 2008년 본에서 개최된 MOP 4에서 거의 합의된 것이었지만, 식료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식량 수출국의 입장(USA 입장 대변)에서 합의를 방해하므로서, 이 회의로 미루어지게 되었고, 이 회의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일본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이, 일본의 정권 교체 후에 통과 되었다.

지금까지 이 추가 의정서가 없는 상황 하에서는, 주 식량과 사료 등 주요한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여 온 도상국은, GMO의 심각한 위험성에 노출되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 피해에 대한 책임과 그 구제에 대한 추가의정서가 채택된 것은, GMO 수입국에서는 커다란 베풀목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 의정서 내용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GMO가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입국은 원인사업자를 특정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는, GMO의 보유자, 개발자, 생산자, 수출입업자, 수송자 등을 포함한다.
- ③. GMO 등에서 만들어진 「가공물」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된다.
- ④. 원인 사업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집행하다
- ⑤. 정부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미리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기금 창설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법은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정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법제도와 정책 전반이 ICA와 UN총회 및 ILO의 권고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위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협동조합 헌장>이 제정

되어야 한다[권영근, 2012년 6월 21일, 「협동조합 제도와 정책 개혁을 위한 제안-‘국제 협동조합의 해’를 맞이 하여-」, 한국 농어촌 사회연구소 워크숍 참조].

(4) ‘협동조합 섹터’의 형성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

레이드로 보고서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협동조합 이데올로기는,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섹터」를 육성하므로서, 「거대한 기업(Big Business)」 [Enterprise]과 「거대한 정부(Big Government)」 [Association]라는 「양대 권력」에 대한 「제 3의 힘」으로서 「맞서는 힘(拮抗力), countervailing power」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즉, Enterprise+Association]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거대기업과 거대 정부라는 양대 기구의 유착화 경향」을 「현대 경제의 가장 현저한 경향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협동조합 섹터가 이 양대 기구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고, 유지하여 가는 것의 의미를 협동조합 인에게 제시한 것 이다. 거대기업과 거대정부는 별개의 다른 조직으로서, 유착화 경향을 갖지만, 협동조합은 통합된 한 조직 내에서 <Enterprise+Association>을 달성하고, 협동조합 간에 네트워크를 넘어서, 협동과 연대의 틀을 강고히 하고 협동조합 섹터를 형성하면 된다는 것이다. 「시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다른 선택지는 스스로들 자신의 그룹, 특히 협동조합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가 강조한 것은, 확실히 협동조합 섹터의 육성 없이는 「양대 권력」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 살아 남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위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룹」이라고 지적한다. 이어서 그는, 「기업이 가공할 힘을 가진 시대에는, 협동조합적 방법이야 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치를 토대로 공동의 권리 를 행사하여, 그 은혜를 향수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더구나, 상호간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고 단언하고 있다.

「상호 간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다」라는 것은, 「외부 불경제」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레이드로의 협동조합 섹터론의 중요한 논리이다. 「자치를 토대로 공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리하여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시민에 의해 전개되는 시티즌쉽의 핵심, 즉, 「자치 · 권리 · 책임 · 참가」의 수행과 이행의 총론적 관점이다. 그러면, 협동조합은, 「거대 기업」과 「거대 정부」라는 양대 권력과 나아가서, Globalisation 하에서 「세계의 장래」를 위하여 어떻게 대항하여 가는가를 협동조합 인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지역농업 주장자들의 <지역>이라는 문제의식의 관념성, 그 문제의식의 불모성을 뛰어 넘는 탁월함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지역」을 문제시하는 근거는, 첫째, 생태 · 환경 · 생명 · 농업의 관점에서, 즉, Entropy의 관점에서 순환성과 다양성과 상호유기적 관계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상호 간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Fair Relationship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구체적 대안사회의 관점, 즉, Association의 관점에서, 한 측면에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자발적 힘으로>라는 것이고, 또한 다른 측면은 시장과 정부, 양자의 결탁에 대한 <대항세력 형성의 근거지>로서 「지역」을 제기하는 것인 데, 이점에서 레이드로의 문제의식은 중요하다.]

(5) 한국 생협운동 진영은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사상의 위기」는 물론 이에 더하여 「지도력 위기」라는 4중고의 「복합위기」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따라서, 4중고의 「복합위기」 속에서도 한국 생협운동의 발전을 위한 가장 급선무는 <전국적 연대조직>의 결성과 그 「전국 연합회의 지도력 위기」로 부터의 탈출이라고 하겠다.

한국 생협운동의 진영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전히 「거대 주식회사의 시대」에 형성된 「대기업 신화(=대마불사)」가 지배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지역에 토대를 둔 생협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즉, 지역특성에 뿌리를 내린 또는 그것을 토대로 한 효과적 고려가 부족하므로 생협의 지역토대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지역 운동조직들의 대부분이 서울의 조직의 지부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의 반영이기도 하다. 지역 소비자의 특성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는 특수한 상품개발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하게 되므로, 자기 지역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는 차별화된 생산자 농민의 개발을 계울리하거나 그들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다양성이 풍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생산자 개발을 소홀히 하므로, 기업적 물류 시스템을 동경하게 되며, 이는 「협동조합 간 경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가능성 1>. 「경영의 위기가 반영된 경우」, 협동조합 간 협동이 아니라, 도시지역의 구매력이 큰 소비자 협동조합과 농촌지역의 공급자 중심의 협동조합과의 경쟁, 그 결과, 쿨복=희생을 강요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 2>. 「사상의 위기가 반영된 경우」, 대상의 본질에 대한 판단 착오, 농민을 자본가로 판단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려는,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비자들의 과도한 협동조합 운동], 이같이 개별 협동조합이 처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신뢰의 위기」, 「경영의 위기」, 「사상의 위기」는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빼를수록 좋다. 이는 개별 협동조합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협동조합 운동 진영에서 합의된 결의를 통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첫거름은 역시 <전국적 연대 조직의 결성> 및 「전국 연합회」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의 정체성(Identity) 위기의 유형에서 살펴 본대로, 그 원인이 ①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 ② 자본주의적 기업과의 관련에서 발생하는 것, ③ 협동조합 「운동성」 소홀, 「사업성」 중시형, ④ 생협 운동의 미래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의 불확실성

이나 또는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극복방안도 이를 기준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생협운동의 전국적 연대조직의 결성 및 그 역할과 기능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 ①. 「전국연합회」는 지역의 생협들이 생협다운 생협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일반적 여건과 조건의 조성 및 조정 그리고 지원 시스템 구축」을 중요한 중심 과제로 해야 한다.
- ②. 정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 운동의 정체성 (Identity) 위기의 먹구름을 전국연합회가 앞장서서 걷어내야 한다. 생협운동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거 잔재의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강화, 생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능의 강화 및 개발된 새로운 정책의 관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 종 협동조합과의 차별철폐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의 강화 등 전반적으로 대정부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연합회의 지도력, 구심력의 강화와 연대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생활협동 운동에서 생산자 측의 기반과 소비자 측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관철 노력을 통해, 「운동성」 및 「자치와 자립」 기반을 구축하여 정체성 확립토록 한다.
- ③. 자본주의적 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되는 정체성 위기는, 현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운동성(협동조합의 본질적 가치, Association)에 토대를 둔 사업 (Enterprise)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국연합회」의 강화된 구심력 있는 지도력으로 지역조합의 연대를 통해 「운동성 강화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운동)」로 구축하여 간다. 「협동조합 간 경쟁」과 「생산자 회생」보다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강화하여, 전략적 제휴를 구축하고, 이종 협동조합 간에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다양한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의 전개를 시도한다.
- ④. 지역조합의 확대, 발전을 위한 연합회의 각종 서비스·지원사업

[교육·홍보·선전·정보유통·다양한 출판사업·새로운 생산현장 발굴 작업·물질순환현형 지역사회 만들기·다양한 연대활동 구축 등등]의 전개, 연구 조사사업 및 그에 토대를 둔 대정부 투쟁사업·대정부 정책대안 개발 및 개선 사업, 새로운 생협운동의 모색과 지평확대 및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업의 연구개발, 「사회적·문화적 Needs와 Aspiration」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사업의 연구개발 [“예”, 각종 반대운동과 대안 제시운동(원자력 반대운동, 반 EDCs 및 GMO운동, 간척지 개발 반대운동, 댐 건설 반대운동, 아파트=시멘트 산업·분뇨 등 폐기물 처리 운동 및 농산어촌의 전통 주거 및 전통생활문화 보존운동, 농산어촌의 Country-Side 보존 및 Amenity보존운동 등] 등은 미래의 생협에 대한 비젼제시 및 더 나아가 미래사회에 대한 대안사회의 비젼 제시와 서로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의 한국적 모델의 제시도 중요한 과제이며, 생협운동의 정체성 확립의 궁극적 목표가 여기로 모여지게 하는 것, 이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는 것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합의·공유 토록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⑤. 현대문명의 본질은 지하자원 의존형 문명으로서,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대량 폐기물> 시스템이지만, <대량생산-대량판매>과정에만 집중된 문명이고, <대량소비-대량폐기>의 과정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따라서 생태계·환경이 파괴되는 문명구조이다. 앞의 과정은 열역학 제 1법칙이 작용되는 과정이며, 뒤의 과정은 열역학 제 2법칙, Entropy증대법칙이 작용하는 과정이다. 앞의 과정에서는 주식회사=대기업 구조의 규모의 경제성 발휘됨. 그러나, 대량소비는 소비자의 가족·개인주의화 경향·안전성 추구경향으로 곤란, 폐기물 처리는 <순환구조>를 취해야 하므로 물건의 집중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 앞으로, Entropy법칙이 작용하는 분야와 새로운 생협운동의 모색을 위한

깊이 있는, 문명비판=문명대안적 새로운 생협운동의 모델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6). 생활협동조합 운동가들에게 생협의 정체성 확립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협동조합의 민주화」이다.

따라서 새로운 민주화 운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한국의 경우, 정치면의 민주화도 아직 요원하지만, 경제면, 특히 협동조합 진영의 민주화라는 과제의 달성이 아직도 요원하다. 「협동조합의 민주화」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고지일지도 모른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의 핵심은 <출자·이용·참가>이다.

출자는, 조합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근거. <이용권>과 <참가권>회득함. 그 밑바탕에는 영리원칙이 아니라 협동의 원칙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출자금은 조합원에게 매력있는 생협 만들기의 수단이다. 출자금의 수준은 생협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의 바로미터이다.

참가, 조합원의 참가는 생협운동의 토대이다. 「생활을 둘러싼 협동과 경쟁의 대결」에서, 영리원칙은 경쟁이라는 수단만으로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므로 인간소외를 재생산한다. 「경쟁」에 대체되는 「협동」의 시스템은 인간의 자발성에 토대를 둔 것이다. 이용참가는 사업활동을 조직활동과 연결시킨다. 이용참가—기관참가—운영참가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조합원 주권의 형해화와 「경영자 지배」의 강화>, <생협의 「창업자 지배」의 만연화 현상>의 폐해, 즉,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정체성 위기를 방지하는 길은 협동조합의 민주화이다.

(7). 끝으로, 예컨대, 한살림의 경우 처럼 또는 일본의 코프 사포로가 <평화와 민주주의>를 스로건으로 내건 <진보적 생협>을 표방했는 것 처럼, 이상에서 언급한 협동조합의 굳건한 정체성 위에 한국의 특수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적 생협이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를 토대로 한 한국적 생협 모델, 한국적 새로운 생협운동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III. 협동조합은 Association과 Enterprise의 통일체 이다.

1. Association

1). Association 발생사적 고찰

협동으로서 또는 연대라는 의미의 Associ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 「시민(bourgeois, bourgeoisie)」 혁명을 거치면서 였다. 그후, 19세기에 들어 와서 프랑스에서 공업혁명이 시작되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것과 동시에, 노동문제, 빈곤문제, 실업문제, 도시문제를 필두로 사회문제들이 표출되었던 시대 부터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대에,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상적 · 실천적 구상이 「사회주의 · 협동체 주의(Associationism)」로서 경쟁적으로 제시되었다.

Association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용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Association은 **자본주의 경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운동들의** 감파(坩堝) 속에서 사용되어 왔다. 마르크스도, 프랑스의 이러한 상황을 답습하여, 아소시아시옹(Associ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동시에 생겨나온 **사회문제를 「자유롭고 자립한 인간들이 협동하여 해결하는 연대조직」 이 Association이었다.** 이 자유롭고 자립한 평등한 인간은 USA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에 의해 선언된 **인간혁명**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사상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사회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Association의 조류들 속에는, 초기 사회주의, 노동자Association(노동자 생산 협동조합), 가톨릭 사회주의, 노동운동, 노동자 부조조직, 당시 시몽주의자의 「보편적 협동조합(Association)」의 구상, 영국의 오우언의 공동체 운동, 그리고 로취데일 공적개척자 동맹(소비자 협동조합) 등의 운동이었다. 따라서 Association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이 협동하고 연대하여**

보다 좋은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변혁,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이 기본적인 관점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

인간혁명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확립된 언론의 자유(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 결사의 자유, 정치권력 비판의 자유, 자본주의 경제비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사회변혁·사회개혁의 운동은, 무력항쟁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언론에 의한 논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제는, 언론이 자본에 장악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언론자본이 언론 노동자를 지배·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무력혁명을 통한 사회변혁 보다는 민주적 국가에서 언론을 통한 사회개혁의 방향이 사회진화의 방향이다.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유를 표방하는 USA가 주도하는 무력과 폭력에 의해 상대를 제압·지배할려는 군사적 패권주의는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론과 평화적 Association 혁명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2). 「Association」의 개념사, 개관

(1). Association의 의미(estrangement)

Association(영어)은 sōsius(라틴어, 한패끼리의, 한패끼리)에 접두어 ad-와 동사화의 어미 -ate, 다시 명사화의 어미 -tion이 결합된 것으로, 본래는 「한패끼리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파생적으로 「한패끼리로 된 상태」를 나타낸다. 다만, sociare(라)는 「관계를 맺다, 잇다, 매다 묶다」라는 의미이며, 한자 「仲(中) 間」과 같은 「속-밖, 우리 사이-외부」라는 이미지와는 다르다.

Association은, 근대 이후, 서양에서 여러 가지 영역의 전문용어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權

利論에서는 「결사(의 자유)」, 인식론에서는 「(관념) 연합」으로, 심리학에서는 「연상(심리학)」으로, 생태학에서는 「(식물)군집」, 신경 생리학에서는 「連合 (野)」, 화학에서는 「(분자의) 회합」, 천문학에서는 「(항성) 連携集團」, 사회운동에서는 「協會」, 사회학에서는 통상 「Association」으로 표기하여 왔다.

심리학에서는 「거미를 보」면 「이상한 공포를 느낀다」 등, 어떤 요소적 경험이 다른 요소적 경험을 「동반하는 associate」 것을 「(관념)연합」이라고 말한다. 이 「연합」이 「어떻게」 또는 「왜」 생기는가를 연구하는 것에 의해 심적 구조나 인지적 구조를 해명하고 하는 입장을 「연합설 Associationism」이라고 부르고 있다. 연합설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나타나고, 17, 18세기의 영국 경험론 철학의 골격을 형성하고, 연상(연합) 심리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요소환원 주의로서 비판받아야 할 한계도 있지만, 현대의 학습심리학의 대부분은 연합설을 토대로 하고 있다.

(2). Association이론의 역사적 전개과정

18세기에는 사회이론에서도 Association이 기본개념으로서 사용되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1762)』에서는 「사회계약」은 「Association 계약」이라고 하고, 정치체를 「Association의 한 형태」로서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고 있다. **공동의 힘으로 신체와 재물을 지키고, 그 위에 개개인들이 계속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은, 각인이 자유의지에 기초한 사회를 건설하고, 자기입법과 자(기통)치를 행하는 것은 Association 밖에 없다.** 이 경우, Association이란, 개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력과 노력을 결합하는 형식으로 자유의지에 기초한 사회를 「생산하는」 행위 그 자체를 말하고, 파생적으로 **그와 같이 하여서, 「생산된」 형태의 사회**를 지칭한다. 다만 루소에게는 정치체 내부의 「부분적 Association」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리매김이 결여되어 있다.

19세기에 오면, Association은 사회주의나 사회운동의 기본개념으로 되었다. Association은 자본주의 가치나 질서에 대항하는 개인들의 연합을 지칭하고, 종종 노동자 자기통치에 의한 경제적 협동조직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장기간의 공방 끝에, 영국에서 노동자가 「Association(결사)의 자유」를 획득한 것은 1824년 이었다. 그때를 전후로 하여, 유럽에서는, 노동자에 의한 경제적 Association, 정치적 Association, 문화적 Association이 활성화 되었다. 협동과 자(기통)치에 의하여 스스로의 생산을 조직하는 생산협동조직의 실천도 많이 출현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사회주의적 또는 공산주의적 사상가도 관여하였다. 오우언 등이 아메리카에서 실천하였던 「뉴 하모니 촌」(1824년--28년)은 「협동 Community Association」이라고 하였다. 그 실패 후 오우언은 영국에서 「노동교환소」도 개설(1832년--34년)하였다(永井義雄, 1993). 1840년대에는 USA에서 Albert Brisbane(1809-1890)등 퓨리에 주의자의 영향 하에 「부룩크 Farm Association」 등 약 30여개의 「Association」이 실천되었다(宇賀博, 1995). 1847--48년의 조사에서는 당시 프랑스의 파리에 300, 지방에 500의 「노동자 Association」이 조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도 있고, 1850년대 전반에는 영국에서도 John M. Ludlow 등 기독교 사회주의자의 영향 하에서 12개의 「생산협동조합」이 조직되었고, 60년대에도 「생산 협동조합」의 재활성화가 나타났다(中川雄一郎, 1989).

이들의 실천적 Association에 영향을 받아서, 이들의 실천을 사회변혁으로 연결시킬려는 사상가들도 많이 배출되었다. 오우언, 퓨리에 및 퓨리에 주의자들, 상 시몽 주의자들, 부체(Philippe Buchez), 프루동, 루이 블랑, 러드로우 등이 있다.

동 시대인이었던, 마르크스도 Association의 핵심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Association론은 『도이취 이데올로기』(1845-46년)에서 「제 개인의 연합화」론으로서 원형이 완성되고, 과도기의 구상이 상당히 국가 집권적이었던 『공

산당 선언』(1848년)에서 까지도, 그 결론은 「부르조아 사회 대신에, 각인의 자유로운 전개가 만인의 자유로운 전개의 조건인 것처럼, 하나의 Association이 출현한다」는 것이었다. 60년 대에는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여, 『자본론』 제 3권(집필은 1863년)에서는 「Associate한 노동」 「Associate한 생산양식」 「Associate한 지성」이라는 표현으로 미래사회가 특징지워지고 있다. 그리하여 『프랑스의 내란』(1871년)에서는, 「가능한 공산주의」가 「연합한 협동조합 단체들이 공동의 플랜을 토대로 하여 전국적 생산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서 구상되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마르크스에서는 Association과정은, 여러 가지 사회관계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힘들의, 권력으로서의 외화과정 및 상품·화폐·자본으로서의 물상화(물건화) 과정에 대한 대항과정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권력화 과정과 물상화 과정>에 대한 <대항과정>으로서, Association 과정을 이해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은, 결국, <권력으로 부터의 자(기통)치와 자본으로 부터의 자립>이라는 레이드로의 논리와도 상통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는 ICA 협동조합 7대원칙 중 제 4원칙인 <자립과 자치의 원칙>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을 철저하게 Association에 토대를 둔 조직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3). Association론의 현상

마르크스 사후, 특히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마르크스 주의는 국가 집권주의를 극도로 강화 시켰다. 그러나 21세기 초입인 현재,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의 붕괴와 Association운동의 새로운 전개가 동시 진행이 나타나고, 사회주의의 Association운동으로서의 전통이 재검토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Global 한 Association 혁명」은, 19세기 사회주의 단순한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역사적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조건 하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질을 갖이며, 전적으로 새로운 주체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이며, 이같은 새로운 조건이나 질이나 주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대의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학에서는, Association은 마을, 읍·면·동, 시와 같은 「Community」 와의 대비에서, 개인들이 특정한 이해관심에 토대를 두고 합의를 형성하는 상당히 다양한 집단을 총칭하는 경우[R.M.마키버,(1914), 『コミュニティ』 (1975년 번역)에서, 영리기업, 가족, 국가 까지도 Association으로 하고 있다]와 한층 더 한정하여, 국가 영역이나 영리기업(시장)이나 **전통적 중간조직**(가족이나 지역 공동체나 교회 등)과는 구별되는 「자율적 연대집단」 을 총칭하는 경우로 구분되고 있다.

2. Association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의 복권

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초래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Association의 흐름들은 시장경제도 아니고 공공경제도 아닌 「사회적 경제」 의 운동으로서 포괄할 수가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도 19세기의 여러 가지 자본제 경제에 대한 비판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이라는 것은, 상호부조이며, 상호협력·연대, 협동이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협동경제」이며, 이 경제를 가능토록 하는 것은 「협동노동」이다. 협동노동은 자본가에게 고용되어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하는 임금 노동은 아니다. 이것은 공동자본의 하에서 보다 좋은 사회적 생활 세계를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하는 노동이다. 「협동노동」의 종류는, 첫째, 스스로 출자하는 노동, 둘째, 협동조합의 경영이나 협동조합 운동에 스스로 참가는 노동, 셋째는, 그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생활재나 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는 노동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전형적 조직이 노동자 Association으로서의 노동자 생산 협동조합이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프랑스의 Association이며, 후자는 영국의 로취데일 공정개척자 동맹이다. 어느 것이나 19세기 전반,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계급투쟁을 확산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스스로 출자를 내고, 협동경영을 하는 Association을, 생산의 현장과 생활의 현장에 만들어서, 생산과 소비에서 협동하면서 상호부조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항하여 형성된 사회주의의 형성과 자본주의의 복지국가가 진행되면서 고려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케인즈적인 큰 정부에 의한 복지국가도 재정적으로 팝박당하게 되고, 신자유주의가 부활되면서, 국민 간에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고, 빈곤문제, 교육, 의료, 주택, 복지, 개호 등의 격차문제가 부각되고, 신자유주의 Globalisation에 의하여 초래된 다양한 문제들(지구 온난화, 환경파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방사능 오염, 자원, 인구, 남북문제, 식량부족 및 안전성 문제, 지역분쟁과 전쟁 및 평화문제, 성폭력 및 에이즈 문제, 난민 및 이민문제 등)은 국가나 시장경제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포디즘과 케인즈 주의, 즉, 국가와 시장 시스템에 의한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결과로서 생겨난 문제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1980년대에 미태랑 정권에 의해 복권 ·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사회적 경제 현장은 다음과 같다.

- 1).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Association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이다.
- 2). 사회적 경제의 사업체는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 3). 사회적 경제의 사업체는 스스로 선택한 활동형태(협동조합, 공제조합, Association)에 따라서 사업활동에 책임을 갖는다.
- 4). 모든 조합원이 생산수단의 소유자라는 자격을 갖는 사회적

경제의 사업체는, 교육, 정보활동에 의해, 내부에 새로운 사회관계를 창조하도록 노력한다.

- 5). 사회적 경제의 사업체는, 각 사업체의 기회평등을 요구한다 (편향적 특혜의 배제, 법률적 평등성). 또한 그 자유를 중시하여 발전의 권리를 인정한다.
- 6). 사업의 잉여금은 사업체의 발전과 조합원에 대한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 7). 사회적 경제의 사업체는 개인과 집단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사회의 조화 있는 발전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 8). 사회적 경제의 사업체는 인간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3. 프랑스의 Association 법

1). NPO로서의 Association

프랑스의 사회적 경제 헌장에는, 사회적 경제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및 Association으로 구성된다고 명기하고,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공제조합은, 각각의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등으로 조직하고, 조합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원의 적립금을 토대로 하여, 조합원의 질병, 부상, 사망, 퇴직 등에 임하여 급부하는 상호부조 조직이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Association이다. 협동조합도 공제조합도 모두 Association이지만, 이들의 조합과 병기되고 있는 Association은, 이 두 가지 조합 이외의 Association, 즉,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NPO(Not-for-Profit)**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3가지 조직을 동시에 병기한 이유는, 프랑스는 1901년에, 르 샤프리에 법을 폐지시키고, 「Association의 자유에 관한 법률」, 즉, 「**Association의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의 법률**」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ct d'association) 제정 공포되어서 이를 토대로, 오늘날 까지 수 많은 Association(NPO)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여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 직후, 르 샤프리에 법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평등은 인정하였지만, Association의 자유, 즉, 길드나 교회 등의 중간집단의 권리나 자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있는 중간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수호한다라는 사고는 중앙집권적 국가관으로서, 프랑스 근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형성되었다. 프랑스 근대국가는, 시민혁명 후에 성립한 「쟈코방 당의 공화정, 그 반동으로서 성립한 나폴레옹 제정, 제정의 붕괴로 인한 왕정복고라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다시 제 2공화제에서 제 2제정으로 유사한 제 2사이클을 그리면서 제 3공화제로 정착하였다⁴⁾」. 그 사이에 10여 개의 성문헌법이 만들어졌다.

그 사이에, 1791년에 제정된 르 샤프리에 법에 의하여, 노동운동, 노동자 Association, 노동조합, 상호부조 조직, 기타 여러 가지 민중의 문화적, 문예적 Association 운동이나 활동은 금지되고 탄압 받았다. 이 법률은 중세 아래 경제활동을 독점하여 온 길드(동업자 조합)를 해산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률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추진하려는 부르죠아지에게 유리한 법률이었지만, 노동운동에는 가혹한 법률이었다. 사상적으로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중간집단 또는 중간국가를 만들지 않도록 하려는 루소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중앙집권적 공화제를 목표로 한 루소·쟈코방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고, 법률적으로는 「Association(결사)의 자유」를 금지한 르 샤프리에 법률에 의해, 19세기의 Association 운동사는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권력상황에도 불구하고, 권력국가적인 것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인 것에 반대하는 사상이 다양하게 표출되었고, 그것을 토

4) 高橋和之 編, 2007, 『世界憲法集』, 岩波文庫, P. 274

대로 한 운동들이 추진되었다. 그 사상은, 1789년 8월 26일 공포된 「**사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제 1조 [자유와 권리에 있어서 평등], 「사람은, 자유로우며 권리에 있어서 평등한 것으로 태어났으며, 또한 자유로우며 권리에 있어서 평등한 것이 지속된다」. 제 2조 [정치사회의 목적과 자연권의 내용], 「모든 정치사회 형성의 목적은, 사람의 자연적이며 시효소멸하는 것이 아닌 권리의 보전에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소유권, 안전,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이러한 사상들은 프랑스 시민혁명 정신이다.

2). Association법의 제정

「**사람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ssociation의 자유는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나 민중은 연대를 강화하여, 권력과 투쟁하고, 이어서 Association의 자유를 쟁취하여 갔다. 예컨대, 노동자의 쟁의권 획득, 협동조합의 합법화, 상호부조 조합의 승인, 집회의 자유의 확대 등을 국가에서 승인 받아 나아갔다.

이같이 다양한 Association운동의 결과 드디어 1901년 7월 1일, 즉, 「**Association의 계약에 관한 1901년 7월 1일의 법률**」(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ct d'association)(약칭 Association법)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2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짧은 법률이지만, 「결사의 자유」를 선언한 법률로서 대법원에 의해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인정되었고, 오늘날도 적용되고 있다⁵⁾.

이 법 제 1조에서는 Association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Association은 항상적 형태이며 2인 이상의 사람이 이익 분배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가진 지식과 활동을 공동의 것으로 하는 합의이다. Association은,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계약과 채무에

5) 大村敦志, 2002, 『フランスの社交と法』, 有斐閣, P. 186

적용되는 일반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제 2조는 설립의 자유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Association은 허가 없이 또는 사전의 제출서류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제 5조에 규정된 것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능력은 없다」.

제 3조는, 무효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ssociation은 모두, 그 목적이 위법한 경우, 법률에 반하는 경우,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또한 영토의 일체성 혹은 정부의 공화주의적 형태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며,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Association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협동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활동이며, 그 활동이 기존의 법률이나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목적이 어떠하든 관계 없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법인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결정하여서 그것을 관청의 창구에 제출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Association법에도 현행 법률에 의한 제약은 있지만, 특정한 Association에 대하여 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인종차별, 성폭력, 아동학대, **전쟁범죄**, **전쟁공정**, 성차별, 삼림방화, 장해자 차별, 테러리즘, **사회적·문화적 배제**, 과거 군인, 교통범죄, 프랑스 어 옹호, 동물보호, 공공교통기관에서의 사고, 약물사용 등에 대하여, Association에 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같이 폭넓은 활동이 Association에 인정되고 있다.

1970년 경에는 프랑스의 Association 설립 건수는 2만 건 정도였으나, 현재는 매년 6만 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태랑 대통령에 의한 사회적 경제의 법제화와 정책의 추진에 의하여 현재는 Association의 수는 약 80만에 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미타랑 대통령이 선택한 길은, USA 대통령 레이건에 의하여 세계에 전파되는 신자유주의는 기업 중심의 영리추구를 지상과제로 하고 있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과 격차가 확대되어서 사회문제의 발생이 심각하여지고, 또한 국가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주의는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관료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선택해야 할 제 3의 길은, 시장경제, 즉 신자유주의의 자본제 경제도 아니고, 공공경제, 즉, 중앙집권적인 관료가 통제하는 국가사회주의도 아닌 「사회적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사회적 경제」의 활동 영역을 확대·확산시켜서,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독립된 섹터로 확립시켜서, 시장경제 섹터, 공공경제 섹터와 대응한 「제 3섹터」로 3자 정립(鼎立)시켜서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 3섹터」 확립에 의한 「경제 민주화」를 통하여, 시장 경제와 공공경제에 의하여 충족될 수 없는 국민들의 생활의 Needs의 충족을 확대하여서, **「시장과 국가의 복합 시스템에 의한 국민 생활의 식민지화」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제 3섹터」의 확립에 의하여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의 존재방식의 변화도 기대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과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실현시키는 것이었다.

3). 상위 개념으로서의 Association

요컨대, 사회적 경제란,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에 의하여서 충족될 수 없는 **시민들의 Needs를, 시민들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서로 협동하여 충족시켜 가는 Association으로서의 협동사업**이다. Association은, 프랑스에서 사회적 경제의 구성체로서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Association(NPO)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좁은 의미의 개별Association이며,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서 넓은 의미의 Association도 있다. 상위개념의 넓은 의미의 Association도, 국가로 부터의 자(기통)치와 시장으로 부터 자립하여서, 국가나 시장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비정부·비영리

협동조직 이다. 이같은 상위개념의 Association 아래에 하위개념으로서의 Association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NPO · NGO 및 그 외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발런티어 조직, 사회운동, 사회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집합체를 Association Sector 또는 「제 3섹터」라고 한다. 이 Association Sector 또는 「제 3섹터」는 국가나 시장에 대하여 「사회」 섹터를 구성한다.

프랑스의 Association은 발생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고찰하여 볼 때,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비판의 역할을 그 근원적 토대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Association론의 근저에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한 권리는 보장되고, 시민들의 생활세계는 「배제」 됨이 없이 충족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개성은 발휘되어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단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인 것처럼 하나의 Association이 대안사회로 출현하게 된다**」 . 이러한 Association의 집합체로서 「시민사회」 가 출현하게 된다.

4. 21세기는 Association 시대 · NPO(비영리 · 비정부 협동 조직)의 시대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은, 신으로부터 국가권력을 독립시켰으며, 종교조직이나 교회 같은 중간조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국가 단위에서 확립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권력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커뮤니티(지역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에 침투함에 따라서 민중의 발언터리 한 자율적 협동으로 만들려 있던 「공적(共的)」 「사회」 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공적(共的)사회」 의 쇠퇴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권력 앞에서 뿔뿔이 모래알처럼 분산된 무력한 개개인들 만이 외롭게 남아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Fordism과 케인즈 주의 정책을 통하여 고도 대중소비 사회(‘소비가 미덕인 사회’)를 초래하게 됨과 동시에 폐기물과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빈부격차의 확대와 각종 차별과 격차의 심화, 사회적 배제가 확대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초래되고, 공공 서비스·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정부기능의 민영화는 이러한 추세를 부추겼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에는, 비정규직과 실업자 대책·직업훈련·성인교육, 보건·의료문제, 모자가정·육아·NEET 족 지원, 고령자 개호·의료, 이민·난민·다문화 가정, 장해자·사회적 배제자, 저출산·사회보장, 지역경제의 쇠태와 활성화, 농업축소와 식량부족, 농촌개발과 환경파괴, 수입 농산물의 증가·먹거리 안전성 문제·식생활 문화의 변화·건강문제 악화 등이다. 신자유주의 추진과 국가의 정책기능 실패로 만들어진 사회 서비스의 증대된 수요와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보장 부문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 운영은 법률이나 규칙에 토대를 두어서 관료적이기 때문에 수요자 개개인의 Needs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 하다.

이러한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민간 협동조직, 즉, Association Sector·「제3섹터」와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서 이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5. Association 운동의 기본원리와 목표

1). Association 운동을 포함하여 모든 운동은, 「시장(돈·화폐)」과 「국가(법률과 그 집행(권력))」로 부터의 「자유롭고 순환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서로 돋는 관계」의 윤리에 토대를 둔 조직(인간관계의 형성)에서 출발한다. 이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여 간다. 농민운동(농민조합), 노동운동(노동조합),

소비자 운동(생협) 등은, 권력의 독점에 저항하고, 금력의 독점에 저항하고, 문화적 독점에 저항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 나아 간다. 「사람다움의 실현은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踐形乃其職)⁶⁾」 이다.

2).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확립이 중요하다. 즉, 인간의 기본 권리가 확립되어야 자본주의의 발전이 달성된다. 인간의 기본권 중에는 「경제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경제활동의 자유」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이전의 자유, 신체 불구속의 자유, 노동의 권리·의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도 포함된다.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확립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Association의 자유」 보장이다.

3). Association은, 「순환적인 상호 의존적 관계」 즉, 「순환적인 서로 돋는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 21세기의 사회변혁의 방향성은, 국가와 시장의 원리에서 자립한, 문제마다, 또는 관심마다의 시민의 연대조직으로서 Association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행정이나 기업의 올바르지 않는 방향을 개혁하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적 공공 공간으로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연대조직으로서 Association이 다수 만들어져서 활동하면서, 각각의 사명과 목적에 따라서 활동하므로서 회원 간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서, 자유롭고 순환적인 상호 의존적인 서로 돋는 네트워크가 형성됨에 따라서 시민사회를 협동사회로

6) 다산의 삿귀 중의 일부이다. ‘踐形’이라는 말은 『맹자』에 처음 나오는 말이다.
“형체와 안색은 하늘이 준 것이다. 성인이 된 뒤에야 형체를 실천할 수 있다。(形色 天性也惟聖人然後可以踐形)”. 이 구절을 다산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형은 몸이다. 색은 안색이다. 성은 천명이다. 사람의 몸과 안색은 천명이다. 사람의 몸과 안색은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하다. 성인만이 이 형체를 실천하여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形者身形也. 色者顏色也. 性者天命也. 人之形色, 萬物之中最為貴, 惟聖人爲能踐履不負此形)”

다산은 천형을 ‘형체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어느 선비는 이를 ‘사람다움의 실현’이라고 재해석하였다.

형성하여 가는 것이다.

4).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히 자본주의적 영리기업은 목적 합리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물인간적인 관계로서 物象化·事象化 된다. 이것이 근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본질적 요건이다. 이러한 요건에서는 인간관계를 이어 주는 언어행위는 지령적 명령적 행위로 된다. 이같은 자기 중심적 의식, 즉, 단독으로 인식하고 지령하는 행위주체 패러다임에서 자유롭고 대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하는 Communication의 행위로 「언어론적 전회」를 하여야 하는 것이 Association의 기본원리 이고, 「현대 시민사회」의 기본적 구성원리이며, 민주주의를 유지하여 가기 위한 기본원리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차별과 격차 및 사회적 배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배제와 포섭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측을 포섭 할려는 측의 논리는, 포섭하는 측의 논리이며, 포섭 당하는 측이 배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의 사람들은, 포섭하는 측의 제도에 의해 배제되어서 생활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포섭하는 측의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포섭하는 측과 배제되는 측이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언론의 자유)를 통하여 제도를 개혁하면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당하는 측면에서 사고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것은 동일 조직 내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도 있을 수 있다.

5). Association은 내포와 외연을 갖는다. 그 기본 원리는 공동자본과 민주주의이다. Associate하는 사람들, 즉, 동지로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결합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associate)이며, 구성원이 서로 돈을 출자하여서 그 공동자본을 토대로, 민주적으로, 즉,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행위(언론의 자유)에 의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Association이다. 즉, Association의 민주주

의는 대화하는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속에서, 구성원 각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선택권이 확립된 후에 1인 1표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이다.

이것을 토대로 하여서, 그 외연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갖는 Association이 형성·조직되는 것이다.

6. Enterprise : jointly owned, democratically controlled 사업체. 불분할 적립금의 출자배당의 금지와 이용액 배당 및 지역사회에 기여.

1). 자유롭고 자립한 사람들의 연대로서의 Association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혹은 커뮤니티 재생을 목표로 하여, 과제에 따라서 전개하는 운동이나 활동공간을 시민적 공공권이라고 한다. 이것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시민적 공공권, 사회성의 실천이라는 운동에는 민주적 방식의 실천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협동조합은 민주주의적 방식의 운동성을 토대로 한 사회성[Association]의 실천과 사업성[Enterprise]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동조직이다.

또한 동시에, 협동조합은 「사업체를 통하여」 목적달성을 하는 Association이므로, Advocacy 운동조직(정책제언이나 권리옹호 등의 운동조직)과는 다르다. 협동조합은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사업활동을 하지만, Advocacy 조직은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Association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소비자 운동, 환경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하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합원 간의 협동의 힘을 집중하여 사업실적을 증대시키는, 사업활동을 통하여 운동의 목표 달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활동이 없이는 협동조합은 존재 할 수도 없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Enterprise이지만, 주식회사와는

달리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조직이다.

2). democratically controlled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과 선택권의 보장 및 1인 1표==> Associative democracy 확립

3). jointly owned : 불분할 적립금, 출자배당의 금지(“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에 위반)와 이용액 배당,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를 통하여 조합원 중심주의의 극복, 협동조합 서비스 센터의 설립, 협동조합 섹터의 확립, Cooperative Community의 건설. 자유와 평등한 권리는 보장되고, 시민들의 생활세계는 「배제」 됨이 없이 충족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개성은 발휘되어서,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인 것처럼 하나의 Association이 대안사회로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Association의 집합체로서 「지역의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된다.

7.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원칙」과 「선언」채택의 의의

21세기의 협동조합 원칙이 채택된 의의는, 첫째,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이 다양화 되는 속에서, 「협동조합의 정의」를 명시하고, 그 속에서, 협동조합의 주체와 목적 및 수단을 선명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명시하고, 그 중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로서,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라는 6가지 가치를 선명하게 함과 동시에, 「협동조합 조합원의 윤리적 가치」로서 정직, 공개,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4가지 가치를 선명히 하였다는 점이다. 21세기의 이념은 **연대,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강조됨.

셋째, 「협동조합의 원칙」을 명시하고, 동시에 이 원칙은 「협동조합이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점을 선명히 하고, 그

위에서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 4원칙】과 【제 7원칙】은 과거 1966년 원칙에는 없었던 원칙으로서, 21세기의 국제 협동조합 운동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레이드로 보고서에서는, 문제제기에 머물렀던 속에서, 제 2회 ICA 총회가 새로운 협동조합의 원칙(정의, 가치, 원칙)과 선언을 채택하므로서, 다양화 하는 세계의 협동조합 운동의 아니덴티티를 체계적으로 공유화 하는 데 공헌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1). 제 4원칙

2). 제 7원칙 : 21세기 협동조합 원칙 중, 제 7원칙, 「지역사회에 대한 관여」는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활동이며, 이를 위해서 협동조합 섹터의 역할이 요구되어 진다.

「분산형 재생 가능한 에너르기를 창출·공급하는 커뮤니티 협동조합」의 창조를 새로운 우선분야로서 포함하여 노력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이다.

3). 함축성 :

IV. UN과 협동조합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사회적 배제 (개발)와 일자리 창출(Coop)

1. UN과 협동조합의 새로운 파트너 쉽 : Association으로서의 협동조합의 본질

‘제 2차 Association 혁명’과 더불어, NGO · NPO의 능력과 경험의 활용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UN 경제사회 이사회와 NGO 협의체도의 한계가 명확하여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회의 방식이 도입되었고, 여성, 인권, 환경, 식량 등 각국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NGO가 참가하는 세계회의가 UN의 중요한 협의의 장으로 되었다[2008년 브라질, ‘리오 + 20’에는 한

국 NGO의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정부의 경비지원을 중단함].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지구 서미트, 리오데자네이로), 1995년 코펜하겐의 세계 사회개발 서미트, 1995년 북경의 제 4회 세계 여성회의, 1997년 로마의 세계 식량 서미트 등이 개최되었고, ICA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특히, 사회개발 서미트에서는 생산적 고용의 창출, 빈곤의 박멸, 사회적 통합의 촉진, 보건·의료의 향상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평가받았다. **2000년 UN 밀레니엄 총회·서미트에서는 2015년 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감시킨다는 장대한 밀레니엄 개발목표(MDG)가 선언되었고 ICA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와같은 UN과의 파트너쉽을 추진한 것은 연락조정 역할을 담당한 COPAC였다. 1971년에 설립된 COPAC는 협동조합의 개발활동의 추진과 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NGO와 UN과의 합의체이며, 현재, ICA, UN, ILO, FAO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제네바의 ICA 본부가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것이 Association으로서의 협동조합의 역할이며, 협동조합이 Association이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UN은 1992년 이후, 거의 2년마다 「사회개발과 협동조합」이라는 총회결의를 밝히고 있는 데, 협동조합의 Association으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UN과 협동조합 간의 새로운 파트너쉽이 깊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UN의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Association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겠다. 그 결과, 2001년 UN의 협동조합 가이드라인이 결정되고, 2009년에는 ‘국제 협동조합의 해’를 선언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1). 빈곤과 격차의 확대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특히 최근 10여 년에 현격히 높다. 이는 1980년 대 이후 신자유주의라는 강풍의 영향으로 세계적

규모에서 빈곤과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린 주민의 자주적 상호부조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UN은 2000년, 21세기 국제사회의 목표로서 「UN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하였다. 「밀레니엄 개발목표」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제에 대하여, 8가지 목표를 내걸고 있는 데, 「극도의 빈곤과 기아의 박멸」이 제 1의 목표이다.

2). 2001년 UN 총회의 결의 :

UN 총회는 2001년 「협동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각국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배경이 깔려있다. 식민지를 경험한 다수의 발전도상국에서는 정부 주도 하의 텁 다운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도입하였고, 협동조합을 경제개발의 Agency(앞잡이)로 내세우면서 협동조합을 정부의 보호와 규제의 아래에 두어 왔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 권 국가에서도 사업계획·인가·재정 면에서 국가주도의 협동조합 만들기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자립적 협동조합으로서의 발전이 억제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요원·괴리되어서 정부의 하부 기관화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Globalisation 하의 시장경제 만능주의와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과거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간섭의 폐지가 요구되었다. 협동조합의 자립적 발전과 정부와의 대등한 파트너 쉽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5년 ICA창설 100주년 맨체스터 대회에서 「협동조합의 Identity 성명」과 새로운 협동조합 원칙이 채택되었는 바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7대 원칙'), 그 제 4원칙에 「자치와 자

립」의 원칙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와같은 흐름 속에서, 「협동조합의 Identity 성명」과 새로운 협동조합 원칙에 정부가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서, UN 가이드 라인이 작성되었고,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 라인의 특징은, 첫째, 각국 정부는 협동조합의 의의와 특질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 1항은 「각국 정부는, UN총회나 경제사회 이사회 중에서, 또는 최근 개최된 주요한 국제회의에서, 시민이 효과적으로 생활을 개선하면서,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Association)·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운동이 국내적 및 국제적 문제 양쪽에서 독립된 주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제 2항은 「각국 정부는, 협동조합 운동이 대단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각 지역에서 자립하여 행동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것, 또한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빈곤의 극복이나 생산적 고용의 확보, 사회통합의 유지 등 사회적 환경적인 목적을 포함한 목표달성을 목적으로 하여 시민이 자조와 자기책임을 토대로 행동하기 위한 조직(Association)·사업체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가이드 라인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재정 면에서 완전한 자립, 자기책임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동시에 정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조직형태와의 실질적으로 동등한 취급(Equal Fitting)을 할 것과 정부와의 대등한 파트너쉽의 확립을,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제 6항은 「협동조합 정책의 목적은, 협동조합을 법인으로서 인지하고,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운동에 의해 설립된 모든 조직이나 기관이 기타의 조직이나 법인과 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보증하는 것이다. 평등한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수한 가치와 원칙이 사회에서 바람직하고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받

아서, 그 특별한 성질이나 관행이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의 이유로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본으로서 동등한 취급이 포함된 것이다.

셋째[**대단히 중요함**], 법률 상, 사법 상, 행정 상의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즉, 협동조합 일반법 혹은 개별 협동조합법의 총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 11항), 협동조합에 관련된 사법·행정 상의 관행(제 13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그 속에는 ICA 성명에 토대를 둔 협동조합의 정의[협동조합은 Association과 Enterprise의 통일물]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서,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제한을 설정하는 현법 상의 규정의 수정(제 10항)**[Association의 자유 보장 및 그 제한의 금지], 협동조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법률·관행의 수정(제 14항),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 사법·행정 상의 관행의 모니터링·재검토·수정(제 15항), 수정의 협의를 위한 절차의 제정과 협동조합의 참가(제 16항) 등 기존의 법률·관행의 수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앞으로 각국의 협동조합법의 입법과 개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끝으로 공적 자금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 3차 안에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직접·간접의 어떠한 재정원조도 배제하며, 협동조합 운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공공지출을,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활성화 하는 환경 및 효과적인 파트너쉽을 확립하는 위에서 정부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코스트를 충족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기술되었으나, 이것은 영국의 ‘산업 공동소유 운동(ICOM)’의 비판에 의하여 삭제되어서, 다른 기업 형태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낙착되었다.

「극도의 빈곤과 기아의 박멸」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UN이 중시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역할이었다. 이 선언 다음해인 2001년 UN 총회는 「사회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2001년 12

월 28일)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UN총회는, 「여성이나 젊은 청년, 고령자, 장애자 등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사회개발에 대한 최대한 가능한 한 참가를 촉진하고, 또한 경제·사회개발에 있어서 계속 주요한 요소로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적용되는 법제도의 재검토를 각국 정부에 장려」 한다.

3). 2002년, ILO 총회의 결의

ILO의 조약은, 그것을 비준하는 가맹국에 대하여, 그 조항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ILO의 권고는 그것에 대하여, 각국의 정책이나 입법, 행정에 지침으로 된다.

초대 ILO 사무국장인 알베르 토마는 ICA 중앙위원회였다. ILO의 협동조합부(部)는 초대 사무국장 죄르쥬 포케(G. Fauquet⁷)나 그의 뒤를 이은 모리스 코롬방(M. Colombin)의 지도 하에서 협동조합 섹터론을 제창하고, 협동조합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회의의 개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과 가입국 정부에 대한 조언을 하였다.

2001년의 UN총회의 결의에 뒤를 이어서, 2002년에는 ILO 제90차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한 권고」(6월 20일)가 결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참신한 사회관이 제시되었다. 「균형된 사회는, 정부 섹터와 영리기업 섹터 만이 아니라, 협동조합, 공제조직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섹터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ILO 제 193호 새로운 권고의 특징은, 전문에 「글로벌화는 협동조합 진영에 새로운 다른 압력, 문제, 과제 및 기회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글로벌화 이익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보다 강한 형태의 인간의

7) G. Fauquet,(1935), Le secteur coopératif(中西啓之, 菅伸太郎, 『協同組合 セクター論』, 1991, 日本經濟評論社)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권고 제 193호의 특징은, 첫째, 제 127호 권고가 발전 도상국의 협동조합 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비하여, 193호는 **모든 나라의 모든 종류와 형태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협동조합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이 권고는, 모든 종류와 형태의 협동조합에 적용한다」(제 1항). 또한 「발전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나라에 있어서,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이 다음의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 4항). 그러면서 다음의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a) 소득창출 활동, 지속적이며 Decent work⁸⁾(“일다운 일자리”,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발전시키는 것
- (b) 교육, 훈련을 통하여 인적 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 동시에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 우위성 및 이익에 대한 지식을 증진 가능토록 할 것
- (c) 기업가 및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사업 가능성을 개발하는 것
- (d)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과 제도금융에의 접근성을 가능토록 할 것
- (e) 저축과 투자를 증진하는 것
- (f) 모든 형태의 차별 배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8) Decent Work는 1999년, ILO총회에서 21세기의 ILO의 목표로서 제안되고 지지를 받았다. 디센트 워크는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말한다. 직접적 노동조건으로서는 노동시간(1일 당, 1주당), 임금, 휴일의 일수, 노동의 내용 등이 인간의 존엄성과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 가능토록 요구된다. 나아가서 이것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으로서 Association의 자유, 단체교섭권, 실업보험, 충분한 고용, 고용차별의 폐지, 최저임금 등이 확보되는 것이 요청되어 진다. 후자의 노동조건은 전자의 직접적 노동조건을 개선,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다. 이 양자의 노동조건이 확보된 경우에만 Decent work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g)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기여하는 것
- (h) 커뮤니티의 사회적 경제적 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활발하고 독특한 경제부문(협동조합을 포함)을 확립, 확대하는 것

둘째는, ICA의 「협동조합의 Identity 성명」에서 제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정의(제 2항), 가치(제 3항 a), 원칙(제 3항 b)을 내용 속에 집어 넣고, 부속서에서는 7가지 협동조합 원칙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UN 가이드 라인에서도 그렇게 한 것 처럼, **ILO의 새로운 권고도 ICA의 「협동조합의 Identity 성명」의 내용을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의 기준으로서 수용·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신 권고는 협동조합이 「연대에 의해 동기 부여된 기업 및 조직」으로서 「조합원의 Needs에 부응한다」라는 共益과 더불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집단의 사회적 포섭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들 집단을 포함한 사회의 Needs에 부응한다」라는 公益的 측면에 노력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제 5항).

셋째는, 정책적 틀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균형된 사회는 강력한 공공부문, 민간부문과 동시에 강력한 협동조합, Mutual(상호 회사), 기타 사회적·비정부 부문의 존재가 필요**[제 3섹터, 사회적 경제 섹터, 협동조합 섹터, Common Sector]**」 시 되고 있다」고 하여서, 정부는 아래와 같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법적 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제 6항).

- (a) 가능한 한 신속, 간결, 값싸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등기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상의 틀을 확립하는 것.
- (b) 협동조합 내에서 적절한 적립금(적어도 그 일부분은 분할 불가능)이나 연대기금의 창설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촉진하는 것.
- (c) 협동조합의 성질과 기능에 따라서 적절한 조건으로 협동조합의 감독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적절한 조건이란, 협동조합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국내법과 관습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기업과 사회조직에 적용 가능한 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것(Equal Fitting) 이다.

- (d) 협동조합 조합원의 Needs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조직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것.
- (e) 특히 협동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자주적 자주관리 기업으로서의 협동조합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 등 이다.

4). 2009년의 UN 총회 결의

2009년 UN총회는, 2008년의 리먼 부라더스로 표상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 시장경제의 혼란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2012년을 ‘국제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하는 「사회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같은 결의는 사회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특히 UN 밀레니엄 개발목표에 대한 협동조합의 노력에 강한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UN 결의는 특히 농협과 금융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위기에서 조합원의 생활을 지키는 역할에 대한 평가는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에도 적용가능 하다.

보다 더 큰 흐름에서 본다면, 국가에서 시장으로, 다시 시민사회로 라는 흐름 속에 이 결의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21세기는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시민의 참가와 협동에 의한 시민사회를 확립하는 것, 시민적 공공성의 유력한 담당자인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이 커다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 협동조합의 해’는, 정부도 영리기업도 아닌 독특한 조직(Association)·사업 모델인 협동조합이 경제사회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에 공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개발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는 2009년의 UN총회 결의는 각국 정부와 협동조합 관계자 등에 대하여 12가지

항목을 요청하고 있다.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사항을 인용한다.

- 「2. UN총회는 2012년을 ‘국제 협동조합의 해’로 선언하고,
- 3. 전 가맹국, UN, 기타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이 ‘국제 협동조합의 해’를 계기로 협동조합……의 사회 경제개발에 대한 공헌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장려하고,
- 4. 지속가능한 개발, 빈곤의 근절, 도시와 **농촌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경제부문의 **생계에 공헌할 수 있는** 기업체 · 사회적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 5. 각국 정부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법적 행정적 규제를 재검토하고……협동조합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촉구한다」.**

V. Association과 사회적 협동조합[Community 협동조합]

권위에 대한 부정.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노동에 대한 자본의 종속성
엘리트 카르텔의 부정과 Common Sector

vi. 결론

「협동조합은 영속적인 약속된 운동이며, 생성되고 있는 운동이며, 끝나지 않는 운동이다. 그것은 결코 완성이라는 것이 없다.…… 열심히 실천적인 협동조합인이 조합원의 요구(Needs)에 부응하고, 보다 넓은 목표를 달성하여, 일상생활에 있어서 협동조합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협동조합이 해야 할 선택에 대해 항상 생각하지 않는 한 실패하는 운동이다.」 고 협동조합 원칙의 준수가 가지는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

■ 발표 2.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과제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한국협동조합운동의 경과와 현황

그리고 과제

유정규(지역재단 운영이사)

- I . 머리말
- II . 한국협동조합운동의 경과
- III .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현황
- IV . 세계협동조합의 최근동향과 한국협동조합의 과제
- V . 마무리

I . 머리말

2011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4,1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에 달하는 1,600여만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400조원에 이른다(전형수, 2012.7). 농협만 보더라도 240만명의 조합원에 23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10번째의 조합 규모를 자랑한다. 뿐만아니라 작년 12월 1일부터는 새로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됨으로써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물리적인 규제가 해소된 상황이다. 업종과 분야에 제한없이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

성화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표만으로는 협동조합이 국민경제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조합이 아니라 임직원의 조합’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농협개혁은 몇차례의 우여곡절을 거쳐 MB정부에 이르러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각각 지주회사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협동조합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될 수 있는 본질적인 개혁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이때 도입된 일부 개선 조치(중앙회장 단임제, 대의원 간선제, 인사추천위원장 배제, 중앙회장 축의·부의금 사용금지 등) 조차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개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혁의 핵심쟁점 중의 하나였던 중앙회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조합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 개정 움직임이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⁹⁾ 이는 박근혜정부 역시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을 국가기관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이 추구해야 할 자율과 자주적 운영, 정체성 확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왜 조합원으로부터 외면받고, 정책당국의 의도에 따라 지배구조가 좌우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왜 그토록 오랜 시간 지속해 왔던 협동조합

9) 지난 2월2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재원의원(새누리당, 군위·의성·청송) 주관으로 「대안경제 모델, 협동조합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김재원의원은 ‘협동조합의 자율성, 조합원의 대표성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회장의 선출방식,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와 자격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후 이를 위한 현행 법률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첫째, 중앙회장의 감시·감독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로써 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대위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인사추천위원장 배제에서 위원장으로 참여토록 하고, 중앙회 이사정수를 3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하며, 중앙회 이사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중앙회장의 축의·부의금 제공제한을 완화하는 등을 담고 있다. 둘째, 경제사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의 경제사업규모 등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을 미달할 경우, 자금지원을 제한하거나 합병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 그 근원을 다시 찾고, 그로부터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진부한 지적이 되었지만, 돌이켜 보면 오늘 날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의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는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결사체’로 출발하지 못한 채 위로부터 주어진 여건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출범한 우리 협동조합운동의 태생적 한계로부터 잉태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농업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협이나 생협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농협의 규정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위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 자체가 그릇된 것이라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협동조합 –신협·농협·생협– 의 출발과정을 되짚어 보고,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간략히 검토한 후에 협동조합의 세계적인 동향과 연계해서 향후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한국협동조합운동의 경과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발전의 시대적 산물이며, 사회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경험의 반영물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 최초로 근대공업국가로 발전한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소비조합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운동¹⁰⁾이 시작된 반면에 영국에 비해 근대공업의 발전이 늦고 농업이 주된 사업이었던 프랑스에서는 1차 산업인 농업부문의 생산자들이 중심이 된 생산자협동조합이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농업이 발달된 영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의 경

10) 1844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근대 협동조합인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The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은 맨체스터 인근의 로치데일(Rochdale)에서 28명의 방직공과 숙련공들이 모여서 자율적이고 공정한 규율을 정하고, 자신들이 필요한 생필품(식료품)을 사고파는 가게를 직접 경영하는 소비자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되었다.

우는 산업화로 인한 화폐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고리대금업자 횡포가 가장 큰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상호부조 개념의 신용조합운동이 처음 시작되었다. 농민, 소규모 소상공인 등 자본조달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게 한 대안적인 금융기능을 제공하는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처럼 근대 협동조합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시작되었지만 각국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가 각각 소비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을 탄생시킨 배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신협운동과 농협, 생협운동의 출발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신협운동의 경과와 교훈¹¹⁾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적 협동조합은 신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일제 하에서도 일본인 중심이 된 농사단체(농업조합, 토지조합, 농회 등)나 면작(綿作)조합, 양잠조합, 축산조합, 지주회 등의 산업단체가 있었지만 이를 근대적 협동조합으로 볼 수는 없으며(농협중앙회 조사부, 2001), 라이파이센식의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조합’과 술체식의 판매·구매·이용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조합’이 있었지만 일제말기 국책기관화(금융조합)되거나 전시통제에 따라 해산(산업조합)되었다. 또, 일본 유학생이나 천도교, YMCA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협동조합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방 이후 협동조합 운동은 신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이다.

초기 신협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보릿고개와 고리채로 상징되는 1950년대와 60년대 한국농촌의 극심한 생활난과 전체 사회의 극심

11) 신협중앙회(2011), 『한국신협 50년사』, 송재일(2012), 박승옥(2011), 주선미(2012) 등 참조

한 실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당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리채를 얻어야 했는데 이 고리채의 이자는 무려 60%에 이르렀고, 농가부채 액수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1/6에 달할 정도였고, 1960년 당시 실업률은 34.2%, 실업자 수는 240만 명에 달했다. 국내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던 경인지역의 공장들은 80%가 조업중단 상태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우리나라 신협운동의 출발이 된 것이다.

일제 하에서의 금융조합과 산업조합이 해방 이후 정부 주도의 농업은행(신용사업)과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으로 재편되어가던 1950년대 말이 지나고 1960년 5월 1일, 부산 메리놀병원에서 27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성가신용조합’이 만들어 졌고, 이어서 6월 26일에는 서울의 계성여자중학교에서 80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톨릭중앙신용조합’ 창립대회가 열렸다. 해방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 출범한 것이다.

부산 성가신용조합을 만든 메리 가브리엘라수녀나 서울 가톨릭중앙신용조합의 산파역을 맡은 장대익신부는 모두 캐나다의 ‘안티고니시운동’¹²⁾을 모델로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29년 대공황의 여파로 심각한 불황이 밀어닥쳤을 때,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떠남으로써 지역의 인구는 줄었다. 당시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의 코디교수와 톰킨스 교수는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교육과 활동가 양성을 시작으로 안티고니시를 협동조합의 도시로 성장시켰다. 그 결과 안티고니시를 비롯한 노바스코샤 지역은 캐나다의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탈바꿈되었다. 오늘날에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나 이탈리아의 볼로냐 협동조합이 한국에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1950년대 당시에는 안티고니시 협동조합운동이 선진적인 협동조합 모델로 벤치마킹 대상이었다(박승옥, 2011)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1957년 12월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에

12) ‘안티고니시운동’은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작은 도시인 안티고니시 지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운동을 지칭한다.

서 2개월 동안 안티고니시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돌아와서 1959년 2월 부산 메리놀 수녀회에서 한국에서의 협동조합 방법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운크라 고문 3명과 주한봉사단체협의회(KAVA) 회원 등 18명과 함께 워크샵을 개최하고 신용조합 설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농촌사목을 주로 하던 장대익 신부 역시 1957년 9월부터 1년 동안 프랜시스 세이비어 대학에 유학을 가 신용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연구하였고, 귀국 후에는 서울교구의 후원으로 1959년 8월 소공동에 사무실을 열어 서울교구와 인천교구 신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소개와 교육 활동을 계속했다. 이때 장 신부가 '협동경제연구회' 회원들과 만나게 됨으로서 신용조합운동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협동경제연구회는 과거 평양교구 소속의 월남 신도들이 신용조합을 빙곤 타개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연구하고 소개하기 위해 1959년 말에 만든 모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의 신협은 불특정 대중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서로 잘 알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부조하는 조합'이라는 신협의 공동유대 정신 아래 출범했던 것이다. 1960년대 신협의 대부금리는 연 1.5~3%였다. 당시 가장 중요한 담보는 대부받는 사람의 '정직성과 좋은 인격'이었다. 대출금은 반드시 지정 용도로만 써야 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되 빌려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대부금 용도가 고리채 정리, 가옥수리, 자녀 학자금, 전세금 마련 등으로 신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고리채 정리였다.

신협운동 초기, 신협의 조직 확산에 크게 기여한 것은 교육이었고, 이 교육의 주체는 '협동조합교도봉사회'였다. 협동조합교도봉사회는 신규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전문조직으로서 매주 개최된 강습회에는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개신교, 불교신자도 참여함으로써 종교계를 중심으로 신협운동이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1963년 7월 1일 협동조합교도봉사회는 사무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이전하고 이름도 ‘협동교육연구원’으로 바꾸었는데, 1971년까지 10년 동안 총 2,0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도 신협 설립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군경, 공공기관, 직장, 단체, 교육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신협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는 쿠데타 이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관제 조직인 재건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켰는데, 재건국민운동본부 경남 도위 소속 재건청년회와 재건부녀회 일부 회원이 협동조합교도봉사회의 3차 지도자강습회(1963년 4월)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강습회에 참여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63년 5월 25일 산청 생초면에 하둔신용조합, 5월 26일에는 창녕 성산면에서 월곡신용조합을 창립하였다. 이것이 새마을금고 1호, 2호이다. 재건국민운동본부가 1964년에 민간기구로 개편되면서 신용조합을 마을금고로 개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970년에 재건금고로 다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2년 신협법 제정 이후에는 마을금고로 또다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과 함께 새마을금고로 법적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뿌리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거 순수 민간자율결사체였던 ‘신용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법인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1973년 277개 신협을 회원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연합회가 공식 발족하였다. 신용협동조합법의 시행은 기존의 신용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국가의 개입과 관리감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신협법 제정과 동시에 당시 재무부는 정관 제정과 개정, 인가 기준부터 업무영역, 이자율, 등기, 각종 세금 문제까지 행정명령인 ‘지침’을 제시하면서 신협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1978년 당시 박정

희 유신정권은 영등포산선 신협에 대해 신협법에 따른 감사권한을 이용하여 조합원 명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아예 해산 명령을 내렸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협은 내부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사장의 전횡과 임직원들의 방조, 조합원 의식 결여가 뒤엉켜서 위장대출, 예탁금 횡령, 부외거래, 조합명의 당좌발행, 상호보증 대출사고, 각종 회계부정사건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내부 사고는 곧바로 정부 감독의 강화를 불러오는 빌미가 되었다(송재일, 2012). 이러한 가운데, 지도자들 육성 속도가 사업의 확장 추세를 따라가지 못했고, 공동유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지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가운데 1980~90년대 국가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은행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고, 이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협은 점차 ‘경영주의’에 빠져들게 되었으며, 급기야 여러 가지의 부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신협의 부실문제는 이른바 IMF 경제위기에 당면하면서 대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1997년 말 1,666개 신협에 경영위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433개 신협이 해산 또는 청산하게 됨으로써 2002년 말에는 1,233개로 줄어들었다. 동기간에 조합원도 10%가 줄어들고, 신뢰의 위기가 발생하자 조합원의 출자도 줄어들어 출자금도 22%나 감소하였다. 결국 신협은 경영안정을 위해 예금보호공사로부터 4조 8천여억 원의 공적자금을 받게 되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민간의 자주조직으로 출발한 그 본래의 성격이 희박해지게 되고 말았다.

2. 농협운동의 경과¹³⁾와 교훈

1) 해방 후 10년간의 농협정비 주요내용

13) 김승호(2001)[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농협론』 제2편] 참조

해방 후 협동조합 정비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의 농협육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제도 구축을 위한 법률제정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당시의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결국은 협동조합법안 제정 쪽으로 정리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됨으로써 1948년부터 시작된 입법노력은 1956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고 있었다.¹⁴⁾

1956년 5월, 금융조합과 동 연합회를 모체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설립되었으나 이는 일반은행법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자본부족, 1년 이상의 중장기 자금차입과 대출의 한계, 농업인을 위한 금리인하의 곤란, 융자조건의 완화 곤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으로써 1957년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초래되었고, 동년 2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과는 별도로 ‘농업은행법(특별법)’과 기초단위(리동농협)에서만 여신업무를 겸영하고 시군농협에서는 경제사업만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농업은행과 경제사업을 전담하는 농업협동조합(구 농협)의 이원적인 협동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14) 이 당시의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흐름을 보면, 1948년 11월, 농림부 주도로 제안된 「농업협동조합법안」이 「농촌경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고, 그 후 기획처에서 제안한 「일반협동조합법안」은 제헌의회의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되었다. 1950년 제2대 국회에 농림부의 「농업협동조합법안」이 다시 상정되었지만 이 역시 국회 내 재경위와 농림위의 의견불일치로 무산되었고, 1955년의 3대 국회에서는 국회내에 “농업협동조합법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을 만들고 이를 농림위와 재경위의 연설회의를 통해 확정하려고 하였으나 농림위는 중앙금고를 포함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주장한 반면 재경위는 농협협동조합과는 별도의 「농업은행법안」을 주장함으로써 법률제정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1955년 8월, 미국의 농업금융전문가 존슨(E.C. Johnson)박사가 내한하여 「한국농업금융의 발전을 위한 건의」(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겸영)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채택되지 못했고, 이어서 1956년 2월에는 ICA 협동조합전문가이며 일본 농협법제정에 참여했던 미국의 쿠퍼(J.Cooper)가 내한하여 존슨안을 재검토한 「한국의 협동조합금융법에 관한 건의안」(금융조합은 신용조합으로, 금융조합연합회는 농업은행으로 개편)을 제안했고, 이를 중심으로 농림부(「농업협동조합법안」)와 재무부(「농업은행법안, 신용조합법안」)가 독자적으로 법안을 만들었으나 이 역시 채택되지 못했다. 1956년 3월, 농어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은 「농업은행」 설립을 지시함으로써 1956년에 한국은행법과 일반은행법에 근거한 주식회사 농업은행이 설립되었다. 김승호(2001), pp.125-128.

2) 종합농협의 발족과 경과

1958년 10월, 경제사업 전담조직으로 공식 출범한 농협(구농협)은 신용사업 전담조직인 농업은행과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부나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곤란했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 4.19가 일어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구농협과 농업은행의 통합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고, ‘농업협동조합중앙금고’설립이 논의되었으나 농업은행과 재무부의 반대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5.16이 발생하였다. 1961년 5월에는 ‘협동조합을 재편성하여 농촌경제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당시 최고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구농협)의 통합을 의결하였고, 1961년 7월에는 새로운 ‘농업협동조합법’이 공포되었다. 이른바 현재와 같은 종합농협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62년 2월,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이 폐지된 1988년까지 25년 이상을 조합원의 대표(조합장) 선출권이 박탈되고 말았으며,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농협을 ‘조합원의 조합이 아닌 임직원의 조합’이라는 비난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법률은 1972년 12월과 1980년 12월 2차례의 개정을 거친 이후 1988년 12월에 폐지되었다.

한편,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모든 리동(里洞)조합을 읍면단위 조합으로 통합한다는 방침 하에 1969년부터 대대적인 합병을 추진한 결과 1968년 당시 16,089개였던 조합이 1973년에는 1,545개소로 감소하였으며, 조합당 평균 조합원수도 139명에서 1,300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때부터 ‘이동조합’ 대신에 ‘단위조합’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9년부터는 단위조합의 기간 사업으로서 ‘상호금융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생활물자사업’이 시작되었다. 1973년 8월에는 ‘농업협동조합법시행세칙’을 변경해서 조합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감독권이 중앙회장에게 위임함

으로써 중앙회장의 회원조합 통제권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중앙회장의 권한을 활용하여 농업협동조합 전체의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후, 1980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전체 사회적적인 격변과 마찬가지로 농협의 조직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즉,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의 계통조직을 3단계(단위조합-시군조합-중앙회)에서 2단계(단위조합·특수조합-중앙회)로 개편하고, 농협이 담당해온 축산지원업무를 별도의 축협중앙회를 만들어 이관하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군조합은 신용업무 중심의 중앙회 시군지부로 개편되었다. 한편, 2단계로의 조직개편과 함께 경영기반이 취약한 단위조합의 지원을 목적으로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상호지원기금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부실 단위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회원조합(=단위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영향력과 장악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농협의 민주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정치사회경제 전반의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농협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988년 12월에는 단위조합장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중앙회장은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농협민주화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아 오던 ‘농업협동조합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UR타결과 WTO의 출범 등으로 대외개방이 본격화되는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부와 중앙회의 지원과 압력 하에 소규모 조합의 통폐합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었다. 즉, 정부에서는 1996년 12월 ‘농업협동조합 합병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조합의 합병조건을 기준의 조합원 2/3 이상 출석과 2/3이상 찬성에서 과반수 출석 또는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고 합병조합에 대한 예산지원등

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합병을 유도해 나갔다.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던 농협중앙회 개혁은 2011년 3월, 개정 농협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된 상황이다. 즉, 그동안 농협개혁의 핵심화두로 주장되어 왔던 ‘신경분리’문제를 신용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해당하는 구조개혁인가, 그동안 농민 진영에서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의 방향으로 주장해 온 연합회조직으로의 개혁과 농민 조합원(회원조합)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협동조합 방식의 구조개혁 요구(박진도, 2009.5.14)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는 사업 구조의 변경일뿐 그동안 농협개혁의 핵심이었던 농협을 농민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것, 중앙회를 회원조합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연합조직체로의 개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진정한 농협개혁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허현중, 2013).

3. 생협운동의 경과와 발전

1) 소비자협동조합의 태동과 발전

1920년 5월 동아일보에 '목포 소비조합'의 창립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소비조합운동이 시작된 것은 일제시대 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방 이후에는 1958년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설립된 풀무학교의 선생과 학생들이 개설한 구판장 사업이 우리나라 소비조합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ICOOP 협동조합연구소 편, 2012). 충남 홍성지역은 역사적으로 협동운동의 전통이 강한 지역이다. 그 원인은 남강 이승훈이 1907년 평안북도 정주군 갈산면 용동촌에 오산학교 설립하였고, 고당 조만식은 세 차례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1920년 200명 규모의 조선물산장

려회, 1933년 물산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 밝맑 이찬갑은 오산학교 재학 중에 자치조직인 용동 자면회 조직하였고, 1928년과 1938년 일본 도쿄와 치바현, 시즈오카를 방문하여 소비조합을 연구한 후 귀국하여 오산 소비조합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8년 이찬갑은 북한의 토지몰수와 종교박해를 피해 충남 홍성군 홍동면으로 월남하여 1958년 풀무고등공민학교 설립하고, 1959년 교사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구매부를 설치했으며, 1969년 정식 소비조합을 발족시키는 등 지역 내 협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홍동지역 비롯한 농촌지역에 설립된 대부분의 소비조합은 당시 농어촌 마을마다 들어선 새마을구판장과 유사한 모습이었다. 즉, 생필품을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협동운동 수준이었다. 이러한 소비자협동조합은 농산촌 중에서도 도로와 교통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광산촌지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되는 1970년대는 지방의 간선도로망이 부설하였던 시절이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세가 험하고 도로망이 부실하며 인구도 적어서 생활필수품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싸게 공급되고 있었다. 강원도 지역은 원주(교구)에서 시작된 1970년 중반의 민간주도 수재지역 지원사업과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진행하면서 쌓은 협동조합운동의 경험이 축적된 실무자들이 있었고, 교육을 통해 훈련된 조합원들이 있어서 협동운동의 짹을 틔운 지역이다(이재우, 2012).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강원도 평창의 ‘신리소비자협동조합’도 이러한 원주 협동 운동의 수혜지역이었다.

당시 생필품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 지역을 시작으로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강원도지역에서 24개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이때의 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는 구판장 형태로서 그 당시 농촌 마을에 많이 만들어졌던 새마을 구판장이나 농협 구판장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당시 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구성방식, 출자

형태와 구판장의 물건 구입방식, 회계와 감사 및 세무관계 등에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즉, ‘구판장 형태로 구매와 공급을 수행하며 출자금 또한 적어서 협동조합 방식대로 운영되었다기보다는 소수의 선진적인 운영 주체에 의해 조합이 운영되었고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김용우, 2007) 강원도 평창의 신리에서 시작되었던 농촌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 혹은 그 아류로서 새마을구판장은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지방의 간선도로망이 확충, 정비되고 현대화된 유통업체들이 지방 소도시까지 진출하면서 농산어촌의 구판장형 소비자협동조합은 급속히 몰락했으며, 1995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소비자협동조합이 문을 닫았다.

한편, 노동조합에서도 개별적, 집단적으로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했는데, 1959년 대성목재 노동조합이 소비조합 점포를 개설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다. 1961년 상업은행 노조가 구내매점 개설(조합원 6,579명 출자금 1천만원), 1962년 제일은행과 국민은행 노조가 뒤를 이었고 1963년 금융기관소비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한국노총은 1981~1987년 협동조합본부를 운영하였는데, 1987년 전두환의 하사금으로 혼수품센터 개설하고 소비조합 사업을 소비자 협동조합연합회로 전면 이관, 1989년 노동복지사업본부 구성하였다가 1989년 이후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2) 생협운동의 출발과 발전

우리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생협운동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협동조합의 역사가 오래된 서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조합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서 ‘생협’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은 일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정원각, 2010. ICOOP 협동조합연구소 편, 2012. 이재우, 2012). 즉,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자본주의사회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문제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그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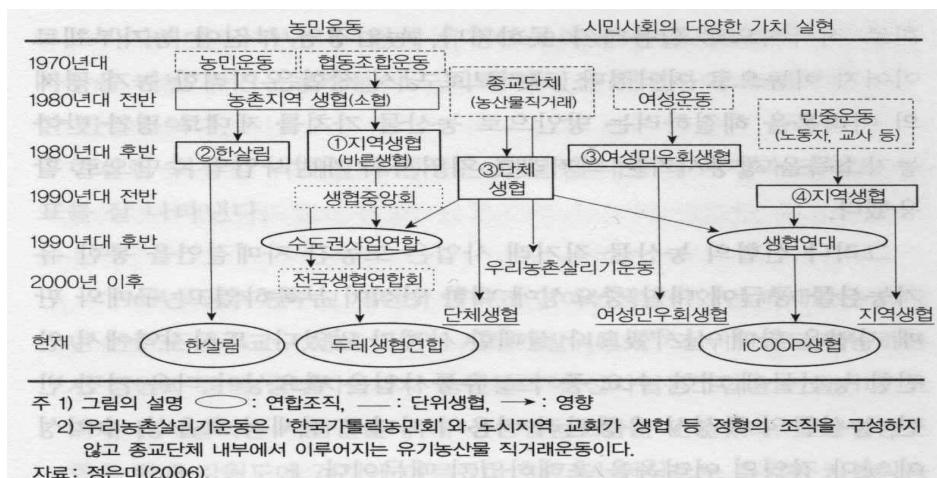
직을 생활협동조합 즉, 생협이라고 지칭했으며, 초기 우리나라 신협 운동가나 소비조합운동가들이 일본의 생협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생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생협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친환경농산물직거래조직’이라는 의미로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말, 우리나라는 민주화 운동의 성공으로 군부 독재가 물러가는 시기인 동시에 시장개방으로 인해 외국산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이다. 이에 따라 군사 정권에 의해 드러나지 않았던 공해, 환경오염, 농약 등의 문제가 봇물처럼 터져 나와서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흐름이 생협조직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생협’이라는 용어가 자리 잡고 아울러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조직’으로 바뀌게 된 것은 일본 생협의 영향 뿐만아니라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우리나라 생협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소비자협동조합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정원각, 2010). 첫째, 취급 품목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즉, 한국의 모든 생협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친환경농산물뿐이다. 다른 나라는 생활에서 쓰이는 상품 모두를 취급하는데 비해 친환경농산물만을 취급하였다. 2010년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일반 공산품을 비롯하여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조합원 가구 평균 소득이 국민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보다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취급하는 물품 가격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약 30% 비싸므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조합원 이용에 있어서 폐쇄형 조합이다. 1852년

영국에서 제정된 『산업공제조합법』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자 협동조합은 개방형이나 한국은 조합원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일본과 함께 두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무점포형으로 출발 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협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한 생산수단인 매장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 생협은 일본 생협의 영향으로 점포 없이 조합원 가정에 직접 공급하였다. 지금은 대부분의 생협들이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매장 공급과 가정 공급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운동 성격이 강하다. 로치데리일공정선구조합이 출범할 때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생협이 만들어질 때에는 노동자가 받은 낮은 임금으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받기 위해 시작하지만 한국은 1980~90년대 시대적인 상황과 초기 생협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노동문제보다는 환경, 식량자급, 농업 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표 1〉 한국 생협조직의 변천과정



안전한 먹거리확보를 중심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생협운동은 이후 의료생협, 교육생협, 문화생협, 노인생협 등 다양한 내용을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의료생협의 경우, 경기도 안성에서 1994년에 안성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안성의료생협은 1987년 안성으로 의료농활을 간 연세대학교 기독학생회 의료인들이 고삼면 가유리 주말진료소 활동을 시작하면서 의료생협으로 진화하는 주춧돌을 놓았다. 당시 의료농활을 들어갔던 의료인들과 마을 청년들은 몇 해 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건강은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협력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깨닫고 몇 해동안의 조직적 논의와 준비를 통해 1994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협인 안성의료생협을 창립하였다. 이후 1996년에 인천 평화의료생협, 2000년에 안산의료생협, 2002년에 대전, 서울, 원주의료생협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현재 전국에 대략 280여개 정도의 생협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료생협이며, 생협법 개정이후 신규 설립신청이 가장 많은 생협 역시 의료생협이다. 이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협을 가장한 사이비 조합설립의 가능성성이 큰 분야가 의료생협 분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III.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현황과 한계

1.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현황

1960년 27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한 신협운동은 50년이 지난 2010년 현재, 557만명의 조합원에 자산규모는 47조7800억원에 이르는 거대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농협은 2011년말 현재 240만명의 조합원에 자회사 25개,

지역조합 1,178개, 중앙회 임직원 1만8천명, 자산규모는 230조, 1년 예산 3조7,800억원의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10대 협동조합으로 성장했다.

생협은 2010년말 현재, 전국에 230개의 매장과 46만명의 조합원에 넌 공급고(=매출액)는 5,300억원이 달한다. 짧은 기간에 대기업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한국협동조합운동의 한계

- 협동조합의 원칙과 변천 내용과 그 배경, 목적
- 협동조합에 대한 몰이해
-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정치적 개입과 왜곡

IV. 세계협동조합의 최근 동향과 한국협동조합의 과제

1. 세계협동조합의 최근 동향¹⁵⁾

1) 협동조합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대응

첫째,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화 및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 현저한 발달 등에 협동조합에 비치는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대규모 협동조합들이 파산하거나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였고, 살아남은 협동조합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고 주식회사 방식의 자본조달 구조 및 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15) 장종익(2012.11)에서 발췌함

둘째,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협동조합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대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특정 지역에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하여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의 볼로냐지역의 협동조합복합체, 캐나다 퀘벡주의 협동조합복합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미국과 서유럽에서의 농협의 최근 동향

1980~90년대 이후 농협의内外적 환경은 그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Hendrikse and Veerman, 2004). 첫째,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농업 보호 또는 지원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협의 시장여건은 과거와는 달리 크게 불안정해졌다. 둘째,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는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제품 차별화를 둘러싼 가공기업 간 또는 소매 유통체 간 경쟁으로 진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처럼 제품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생명공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농협이 이러한 식품공급체인 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R&D에 대한 투자가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자본 조달문제와 투자유인 및 투자성공률이 점차로 농협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셋째, 농협의 규모확대로 인하여 조합원 구성상의 이질성이 점차로 커졌을 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원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의 부족문제로 농협의 활력과 지속적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존 농협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규모화의 이익을 도모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협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합병은 대부분 1차 농협들 간에 추진되었고 이러한 합병을 통하여 규모화된 1차 농협의 탄생으로 중간단위의 연합조직들은 해산하거나 흡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일품목을 취급하는 품목농협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에 종합농협이나 구매농협의 경우 연합조직으로 사업이 집중화하고 1차 농협은 연합조직의 지점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대모화된 1차농협이나 대규모연합조직들은 외부로부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로 확산되었다. 유럽과 북미의 많은 대규모농협들이 우선주나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하거나 자회사를 설립하여 외부 자본과 우수한 경영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농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농협도 관찰되고 있다 (Bekkum and Bijman, 2006; Chaddad and Cook, 2004).

이러한 기존 농협의 대규모화 추구 및 자본조달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노력은 일부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¹⁶⁾ 2000년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대규모농협이자 가장 유명한 농협들이 파산하거나 투자자 소유기업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에서는 중서부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농협에서 1위의 사업규모를 자랑하던 팜랜드(Farmland)가 2002년에 파산하여 매각되었으며, 같은 해에 동부지역의 대표적인 다목적 연합농협이자 미국농협에서 10위의 사업규모를 지녔던 에기웨이(AgWay)도 파산하여 매각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매니토바주와 알버타주의 대표적인 다목적 곡물농협이었던 에그리코어 유나이티드 (Agricore United)가 2002년에 공개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스캐치완주의 대표적인 다목적 곡물농협이었던 사스캐치완 퀴풀 (Saskatchewan Wheat Pool)이 1996년에 출자증권의 일부를 주식

16)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종익(2010b)를 참조할 것.

시장으로 상장하더니, 그리코어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이후 완전히 공개주식회사로 전환되었고 명칭도 비테라(Viterra)로 변경되었다.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1980년 이후부터 기존 농협을 탈퇴하고 신세대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1980년대 초 10여개에서 2003년에 147개로 증가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Fulton 외, 2006). 신세대협동조합은 기존의 전통적 농협과는 소유와 이용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제한된 지역 내에 동질성이 강한 농민들이 고부가가치사업을 추구하는 소규모 농협이라는 점에서 기존 농협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신세대협동조합은 출자증권의 거래, 출하권과 출자의무의 비례적 연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비례형 지분거래 협동조합"(Nillson, 1999)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례형 지분거래 협동조합적 모형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의 일부 농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Bekkum and Bijman, 2006).¹⁷⁾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농협의 소유와 이용관계를 특징화하는 조직모형은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다.

3) 신협의 최근 현황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Council) 소속 신협은 4만 9천여개이며, 이들은 96개국에서 1억 77백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국제라이파이젠연맹(International Raiffeisen Union) 소속 신협은 90만 개이며, 이들은 100여개 이상국가에서 5억 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은 20%에

17) Harris와 Fulton(1996)은 신세대협동조합의 조직모형이 지니고 있는 두 가지 특성 즉, 출하권과 필요자본금 투자의무의 비례적 연계, 출자증권의 거래¹⁾ 등을 전통적 농협 조직모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본조달의 제약문제나 조합원의 기회주의적 행동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또한 신세대협동조합이 원료농축산물의 출하와 관련된 명시적 계약을 통하여 조합원과 농협 사이에 정보가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농협에 대한 조합원 요구의 동질성으로 인하여 경영자대리인문제나 임원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리인문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네덜란드의 라보뱅크(Rabobank)는 네덜란드 국민의 50%를 조합원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은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협도 농협처럼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혁명이라고 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대부분 나라에서 합병을 통한 규모의 확대, 자회사화를 통한 전문화, 외부자본의 조달 등을 주요 대응전략으로 채택하였다. 2007년 발 미국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제침체 시기에 주요 국가의 신용협동조합들은 다른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에 비하여 타격을 덜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조합원수와 시장점유율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신협이 주식회사은행에 비하여 더 위험회피적이고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Birchall and Ketilson, 2009).

일례로, 캐나다신협은 농촌지역에서 철수한 주식회사형 상업은행 지점들을 인수하여 농촌지역 내에서의 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¹⁸⁾ 미국신협은 지역, 직장, 교회 등 단체 등으로의 공동유대(common bond)를 기초로 형성되어 왔는데,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1972년과 1982년에 신협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공동유대의 법적인 정의가 대폭 완화되었다. 이러한 법적인 규제 완화와 신협연합회의 법인세 면제 등에 힘입어 신협조합원 수는 1980년에 44백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 8천7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¹⁹⁾

Birchall(199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캐나다 데잘딩신협은 조합원의 상호금융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발은행으로서의 역할과 다른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과 지원 역할을 수행해오고

18) 캐나다신협은 농촌지역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 운영구조를 추구하는 반면에 도시 지역에서는 대규모화를 통한 효율성을 추구해왔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캐나다신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신협조합원수는 1980년까지 급성장하여 1천만 명에 도달한 이후 1980년대 초에 하락 혹은 정체하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 1천1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Fulton 외, 2006).

19) 그러나 1998년 신협법의 개정으로 많은 신협들이 상호저축조합(mutual savings and loan)으로 전환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공개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Fulton 외, 2006).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캐나다 불어권지역인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전해 온 인민금고(*caisses populaires*)라는 이름 하의 데잘딩신협은 2009년 말 현재 481개 신협, 조합원 수 5백80만명, 1천2백억 달러의 자산규모, 42,200명의 직원규모로 발전했다. 이러한 데잘딩 신협그룹의 지속적인 성장은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직 및 경영혁신을 꾸준히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데잘딩신협들은 다른 나라의 신협들처럼 1980년대 이후부터 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영기반의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기법과 활동들을 도입하였다.

데잘딩신협은 이처럼 규모화를 통한 효율성 추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1차적 초점을 맞추고 신협의 윤리적 정체성을 발현시키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에서 돋보인다.²⁰⁾ 데잘딩신협그룹은 지역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퀘벡에서 필요로 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시스템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데잘딩 신협그룹의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퀘벡주에는 소비자협동조합과 주택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연대협동조합이 발전해왔다.

4) 소비자협동조합의 최근 현황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소비자협동조합은 가장 먼저 시련을 겪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50년대 말에 소비자협동조합이 성장을 멈추고 그 이후 급격히 쇠퇴하였다.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생필품에서의 시장점유율은 1950년대 말에 약 11%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4%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스위스와 이탈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종익(2010c)을 참조할 것.

리아, 그리고 북유럽을 제외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Birchall, 1997). 독일 최대의 도르트문트소비자조합은 1998년 초에 사실상 도산하였고, 오스트리아소비조합은 1995년에 파산을 선고받았다. 그리하여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소비자협동조합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Birchall, 1997).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시장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핀란드의 소비자협동조합은 최근에 40%의 시장점유율을, 스웨덴은 2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Co-op Suisse와 Migros는 최근에 각각 17%와 3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Birchall, 2009).

이러한 유럽과 북미에서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쇠퇴는 소비자 조합원이 원하는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독과점문제가 약화되었고, 이러한 독과점문제 해소를 목표로 한 소비자협동조합의 장점이 급속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기존 소비자협동조합들은 합병을 통한 대규모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방식의 모방해왔지만 자본조달과 제품조달의 측면에서 주식회사형 소매기업의 장점을 능가할 수 있는 협동조합 고유의 장점을 발견하는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950년대 중반에 일반 생활필수품이 아닌 유기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²¹⁾ 식품의 안전성 제공을 둘러싼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경쟁과 최저가격을 둘러싼 경쟁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에 잔존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중 가장 큰 소협인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이 식품표시제, 커피 및 바나나 등의 공정무역을 통한 조달, 그리고 환경측면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

21) 일본의 지역생협은 2005년에 161개이며, 1,649만 명의 조합원을 보유할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한국의 소비자협동조합도 일본의 생협운동방식을 상당부분 모방하였는데, 2009년 현재 41만 명의 조합원, 4,640억원의 공급액규모로 성장하였다.

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Birchall, 1997). 이처럼 영국 협동조합그룹의 새로운 활동으로 영국내 생필품 시장 점유율은 최근에 8%까지 상승하였다(Birchall, 2009).

유럽의 대부분 국가의 소비자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쇠락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 온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Coop Suisse)은 정직한 식품표시제, 담배광고 중단, 인구 과소지역에서의 점포의 유지 전략을 오래전부터 채택해온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2000년부터 유기농산물과 공정무역에 착수하였다. 또한 스위스의 미그로(Migros)²²⁾는 식품에서 시작하여 은행, 보험, 호텔, 건강단련센터, 채소 및 꽃 가꾸기 지원센터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배당을 하지 않고 저렴한 가격과 성인교육활동에 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미그로는 아동복의 조달을 위하여 공정무역에 착수하였는데, 말리의 농민들에게 유기면화를 생산하도록 하고 이로부터 생산된 면화는 인도의 공장에서 제조되도록 하고 있다(Birchall, 2009). .

생필품, 연료, 가구 등을 공급해 온 미국과 캐나다의 전통적 소비자협동조합도 1980년대 이후 어려움을 겪어 온 반면에 유기농산물, 공정무역, 자연식품시장, 아웃도어 의류와 장비를 취급하는 소비자협동조합 등에서는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새로운 협동조합기업의 등장

세계 협동조합 부문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과 유사한 기업형태들이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는데,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과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업조직은 전통적 협동조합과는 상당히 다르고 비영리기업과 협동조합의 복합적 형태라고 할

22) 1925년에 사기업으로 창립된 미그로는 창립자에 의해서 1940년에 12개 지역협동조합과 전국협동조합으로 전환되었다.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포르투칼에서는 사회적 연대협동조합(social solidarity cooperative), 캐나다 퀘벡에서는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 프랑스에서는 공익협동조합(collective interest cooperative) 등과 같이 유사한 이름으로 선진국에서 발전해 왔고,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대출만을 취급하는 마이크로크레딧과 더불어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전해 왔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보다 큰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경제활동조직으로 주로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서비스의 전달,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운영되는 '독특한' 기업들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독특함'이란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논의되어 온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교집합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각국에서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국제적 차원에서 진전된 '경쟁으로부터 밀려난 장기실업자와 만성적 낙후지역'이 증가하고 비인격적 거래(impersonal exchange)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빈곤화 현상(Sen, 2006; Ben-Ner, 2006)이 가중되었으며, 인구의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적 진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사회 및 보건서비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환경보호, 문화 보존 및 증진, 사회적 관광, 대학이후의 교육, 문화서비스, 방과 후 교육,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등 과거에는 국가가 담당해 왔던 각종 사회서비스가 점차 사적영역 혹은 국가와 개인의 중간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영역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마이크로파이낸스는 개발연대라고 불리어진 1960~70년대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시도된 정부소유형 개발은행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신용협동조합도 확산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등장하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주요 상업행들이 담보가 없는 빈곤층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였고 이러한 빈곤층들은 지역의 대부업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대부업자들은 공식적인 상업은행들에 비하여 지역 내 차입자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담보가 없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금융배제계층의 빈곤탈출을 위해 전통적 금융기관과 상이한 방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형태의 대안금융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방글라데시에서 1977년에 그라민뱅크가 설립된 이후 급속히 확대되어 1997년에는 이용자가 1350만명, 2007년에는 1억 5,480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3,352개의 마이크로파이낸스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2. 한국 협동조합의 발전과제

협동조합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협동조합의 발전과제를 추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여건 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협동조합과 파산하는 협동조합의 차이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되짚어 보면 위협요인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협동조합의 대응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시장지향적으로 나가는 경우와 다른하나는 조합원 밀착 혹은 현장밀착형으로 나아가는 경우이다. 많은 경우, 전자를 선택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파산하거나 몰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조합원 밀착 혹은 지역밀착으로 나아간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협동조합의 원칙 중 지역사회 협동조합의 실현(제7원칙)을 추구하는 경우, 발전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합원의 생활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일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950년대 중반에 일반 생활필수품이 아닌 유기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시사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에 잔존하고 있는 소비자협동조합 중 가장 큰 소협인 협동조합그룹(Cooperative Group)이 식품표시제, 커피 및 바나나 등의 공정무역을 통한 조달, 그리고 환경측면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으며,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의 소비자협동조합과 달리 전후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온 스위스의 소비자협동조합(Coop Suisse)이 정직한 식품표시제, 담배광고 중단, 인구과소지역에서의 점포의 유지 전략을 채택해온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협동조합의 발전과제는 첫째, 시장을 상대로 한 경쟁력강화 방향이 아니고 조합원이 요구하는 생활상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많은 협동조합이 도산하는 속에서도 유기농산물, 환경보전, 공정무역, 지역식품 등을 공급하는 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지역사회기여)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업의 효율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나 북미, 일본, 이탈리아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효율화와 소비자요구에 충실하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동시에 추구가능한 전략이다.

둘째,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한국 농협의 개혁방향 설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오늘날 한국 농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인 농민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자치적 협동조직'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농협법 제13조에 따르면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농협은 무엇보다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협동조직’으로서 생산·판매·유통·교육·신용 전반에 걸쳐 ‘협동화’를 통해 조합원의 편익을 최대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경제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용사업은 이러한 경제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조합 자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한 각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강화이다. 레이들로박사(1980)가 30년 전에 전망하였듯이 최근에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 부문은 다양한 협동조합들의 연대 및 복합체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역사회들이다.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복합체, 이탈리아 볼로냐 협동조합 지역사회,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등이 잘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주지역의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형성 노력(조세훈, 2009)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 강화는 기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은 물론이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새로이 등장하는 협동조합과 기존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조합원의 개별적인 이익과 공공적 이익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마이크로파이낸스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개별적 이익(individual interest)과 협동조합의 공공적 이익(public interest) 추구 사이의 조화를 목표로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구성, 지배구조, 이익배분구조 등에 있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 의한 소유 및 지배구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기여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동조합조직 형태의 혁신이 요구된다. 앞으로 세계 협동조합은 개별조합원의 이익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에서

공공적 이익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으로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지역단위 협동조합의 역할 재정립과 조합원의 각성이다. 한국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회를 현재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에서 연합회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농협을 생산-수확 및 수집-가공-판매(마케팅)를 일괄 책임지는 지역농업 조직화의 주체, 즉 품목별·기능별 전문농협으로 발전하도록 재편해나가야 한다. 읍·면 조합별로 난립된 영세한 경제사업을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그리고 농민에게 부가가치를 더욱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통폐합하거나 연합하도록 한다. 한편으로는 품목별·기능별 전문농협으로 육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주민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된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지역사회 협동조합으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

V. 맷음말 : 협동조합에 대한 환상을 경계한다.

- 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경계해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발전방향 : 지역사회 지향형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
 - 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한다는 전통적인 조합관을 넘어서 커뮤니티 재생, 커뮤니티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동조합 발전
 - 레이들로 ICA 보고서 천착 : 전통적인 협동조합의 한계/위기 극복
 - 협동조합 7원칙에 충실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 경계해야 할 것 : 최근에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 요구

- 협동조합의 존립조건에 대한 고려없이 협동조합에 대한 막연하고 과도한 기대와 환상을 부각시키는 현 상황,
- 국가가 담당해야할 복지기능 축소하고 그 책임을民間에 떠넘기려는 의도(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을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회피(民间 기금에 의한 자금조달이 아닌 인민금고, 협동조합 전담은행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CDI세미나 2013-5

제2회 충남 협동조합 연구포럼
한국협동조합의 관제와 지역사회기여

- 발행자 : 박 진 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 주 소 : 314-140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 전 화 : 041-840-1211
 - 홈페이지 : www.cdi.re.kr
 - 인쇄일 : 2013. 3. 05
 - 인 쇄 : 예로니모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충남발전연구원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